

성평등복지 토론회

비혼/딸 부모돌봄, 두려움과 막막함 사이 :

돌봄연대사회를 상상하다

■ 일시 : 2018년 10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순서

❖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14:00 -15:30 발제 및 토론

발제 1 비혼여성의 부모돌봄 경험

: 부정의(不正義)한 독박돌봄을 넘어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
_석재은 (한국여성민우회 이사/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2 ‘딸’을 넘어 시민을 상상하다

_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토론 1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토론 2 지은숙 (비혼돌봄연구자/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15:30 -16:00 질의 응답

목 차

■ 발제1. 비혼여성의 부모돌봄 경험

: 부정의(不正義)한 독박돌봄을 넘어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

6

석재은 (한국여성민우회 이사/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왜 비혼 여성의 부모돌봄에 주목하는가?
 - 1) 돌봄의 사회화 진전, 그러나 여전히 돌봄의 주변화
 - 2) 가족 내 취약한 지위의 비혼여성에 대한 돌봄부담의 지나친 쏠림

2. 돌봄부담의 불평등한 쏠림과 부정의(不正義), 그리고 돌봄민주주의
 - 1) 비혼과 부모 돌봄
 - 2) 돌봄정의와 돌봄부담의 불평등한 쏠림
 - 3) 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민주주의¹⁾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 1) 돌봄책임의 전가와 귀착: 왜 비혼여성인가?
 - 2)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독박돌봄
 - 3) 고립된 독박돌봄, 끊어진 돌봄연대
 - 4) 많이 부족한 사회적 돌봄
 - 5) 돌봄경험 과정에서의 깨달음과 성숙: 의존의 정상성과 인간의 존엄성
 - 6) 가부장제 균열의 조짐
 - 7)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 권리를 지키는 공동체에 대한 상상 : 함께 돌봄을 위한 필요조건

5. 함께 돌보는 돌봄민주주의를 향하여

1) 석재은(2018)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57-91

Ⅰ 발제2. ‘딸’을 넘어 시민을 상상하다

----- 42

_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I. 들어가며

II. 조사 대상 및 방법 개요

III. 기/비혼 여성의 부모돌봄기

1. 딸 돌봄의 시대
2. 문제는 ‘독박’이다
3. 선별복지의 문제
4. 경제력에 따른 돌봄의 격차
5. 일과 돌봄, 그 사이에서
6. 돌봄을 통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맺음’이 가능한 조건

IV. 변화를 위한 상상

1. 돌봄에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2. 관계 중심의 일상적 돌봄
3. 가족을 넘어, 확장되는 관계를 위한 새로운 제도
4. 돌봄과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V. 나가며

Ⅰ 토론문

토론1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72

토론2 - 지은숙 (비혼돌봄연구자/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84

발제 1

비혼여성의 부모돌봄 경험: 부정의(不正義)한 독박돌봄을 넘어 돌봄민주주의를 향하여

석재은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림대학교 교수)

1. 왜 비혼 여성의 부모돌봄에 주목하는가?

1) 돌봄의 사회화 진전, 그러나 여전히 돌봄의 주변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돌봄의 니즈도 급증하고 있으며, 돌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비롯한 돌봄의 제도화를 통해 돌봄 부담을 사회연대적으로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돌봄의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사적이고(private) 가족 내 보이지 않는 그림자(shadow) 영역에 놓여있다.

인구고령화, 가족의 변화 등 인구사회적 변화는 돌봄니즈를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추동했다(Taylor-Gooby, 2004).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내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담지되어 왔던 보이지 않던 돌봄노동이 가시화(可視化)되었다. 현대 복지국가는 돌봄의 제도화와 사회적 자원의 할당을 통해 사회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기존에 가려져있던 보이지 않던 돌봄노동에 대한 전면적 가시화와 정당한 사회적 보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사회질서와 정의개념에 도전하지 않는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기능적으로 돌봄을 처리하는 선택을 해왔다. 젠더 부정의(不正義)와 결합하여, 여성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재생산노동)에 대해서는 생산노동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의 중심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써 외면해왔다. 돌봄의 제도화로 돌봄제공자가 보이지 않던 비공식영역에서 가시적인 공식영역으로 일부 나왔지만, 젠더코드화된 돌봄노동의 평가절하(平價切下)로 돌봄제공자는 여전히 완전한 시민으로 처우받지 못하고 있다(석재은, 2018). 이는 여성을 타자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할 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독립적 존재,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Nussbaum, 2002).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돌봄니즈를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능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돌봄니즈를 가진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를 최대한 주변화(marginalization)하고 있다(석재은, 2018).

2) 가족 내 취약한 지위의 비혼여성에 대한 돌봄부담의 지나친 쏠림

사회가 커져가는 돌봄니즈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능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둘 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권력자원이 취약하여 권력위계의 하단에 위치한 집단일 수밖에 없다. 공식, 비공식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중하층 여성이 바로 그러하다. 돌봄노동 영역에 남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중상층 여성의 상당수도 돌봄 부담을 중하층 여성에게 전가한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정당한 가치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영역에는 힘없고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참여가 배제된, 취약한 권력자원을 가진 여성들이 주로 돌봄을 담당한다.

가족 내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자녀, 특히 비혼 여성이 가족 내 권력자원의 취약자이다. 돌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혼 여성은 가족 내 부모돌봄을 맡도록 타의에 의해 강요당하고, 때로는 자발적 선택으로 돌봄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와 돌봄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비혼 자녀의 부모돌봄 경험에 대한 통찰적 논문들(지은숙, 2014, 2017; 박승현, 2017)에서도 확인된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 4분의 1에 달하는 26.2%(2012년)가 비혼 자녀와 동거한다. 일본의 비혼자녀 부모돌봄에 대해 연구한 지은숙에 따르면, 고령화로 노인 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비혼 자녀가 부모 돌봄자로 호명되고 있다. 비혼 자녀는 일과 돌봄 양자택일을 강요받아 경력단절을 겪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곤궁해지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부모를 돌보는 비혼인 ‘개호독신’이 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고통 속에 부모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개호살인’, ‘개호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경향신문, 2018. 1. 26).

따라서 본 연구는 돌봄의 불평등한 쏠림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비혼 여성의 부모 돌봄 경험에 천착하여 들여다봄으로써 돌봄이 비혼여성에게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과정, 돌봄의 책임을 맡은 이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잊혀지고 배제되는 현실 등 돌봄을 둘러싼 부정의(不正義)한 현실을 드러내고 환기하고 성찰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돌봄정의(Caring Justice) 관점에서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독박돌봄을 넘어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돌보는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돌봄연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돌봄부담의 불평등한 쏠림과 부정의(不正義), 그리고 돌봄민주주의

1) 비혼과 부모 돌봄

부모돌봄의 분배가 민주적이지 않다. 부모 돌봄의 1순위는 비혼 딸, 2순위는 기혼 딸 또는 비혼 아들,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기혼 아들이 책임을 떠안는다.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빚어지는 돌봄 공백을 비혼 자녀들이 메우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 사회에서 비혼은 공동체의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비생산적 존재로 여겨진다. 가족 내에서 돌봄을 분배할 때 생산적 가정을 만드는 건 기혼 자녀, 부모 돌봄은 비혼 자녀가 떠안는 이중구조가 형성된다(지은숙, 경향신문, 2018. 1. 26).

가부장제가 공고할 때에는 며느리가 권력위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었다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유급노동 증가, 부양의식의 약화로 가부장제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원가족(original family) 중 가장 권력자원이 취약하여 권력위계상 말단에 놓인 대상은 비혼 자녀, 특히 비혼 여성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혼이 증가하면서 비혼 여성이 돌봄 독박을 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비혼이라고 칭한다. 결혼을 필수로 전제하는 패러다임하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미혼이라고 표현해왔으나, 최근과 같이 결혼이 선택적인 삶의 형태가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중립적인 표현인 비혼이라고 표현한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 기반한 한국 인구의 성별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노령기를 제외한 전연령대에 걸쳐 남성의 비혼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 사별율은 여성이 전연령대에 걸쳐 남성보다 높으며, 이혼율도 노령기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이혼율이 남성보다 높다. 전체적으로 무배우 비율은 40대까지는 남성이 높다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무배우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진다. 부모 돌봄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 40대 중반에서 60대에는 여성의 비혼 비율은 5% 내외로 높지 않다. 그러나 무배우 비율은 20%대로 높은 편이다.

비혼이나 사별, 이혼 등 무배우자 상태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의 젠더질서로부터 벗어난다고 봤을 때, 원가족의 부모돌봄을 타의든 자의든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40대 후반 이상의 여성 중 5명 중 1명이 원가족 부모돌봄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표 1>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2015)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미혼	전체	46.3%	25.8%	16.7%	9.9%	5.6%	3.6%	2.2%	0.9%
	남성	55.5%	32.7%	22.2%	13.6%	7.6%	4.5%	2.4%	0.9%
	여성	36.8%	18.9%	11.2%	6.2%	3.6%	2.7%	2.0%	1.0%
사별	전체	0.1%	0.3%	0.8%	0.8%	1.7%	3.4%	8.4%	36.3%
	남성	0.0%	0.1%	0.3%	0.7%	1.2%	2.0%	2.5%	10.7%
	여성	0.2%	0.4%	1.3%	2.8%	5.7%	10.4%	14.2%	55.1%
이혼	전체	1.6%	3.5%	7.3%	9.7%	10.4%	9.3%	5.7%	3.7%
	남성	1.1%	2.5%	5.6%	8.0%	9.2%	8.6%	5.6%	4.4%
	여성	2.2%	4.5%	9.1%	11.6%	11.7%	10.1%	5.8%	3.2%
무배우자 (미혼,사 별,이혼)	전체	48.0%	29.6%	24.9%	20.5%	17.8%	16.4%	16.3%	40.9%
	남성	56.6%	35.3%	28.1%	22.3%	18.1%	15.0%	10.5%	16.0%
	여성	39.2%	23.8%	21.6%	20.6%	20.9%	23.2%	22.0%	59.3%
유배우자	전체	52.3%	70.6%	75.9%	78.7%	80.1%	79.8%	78.1%	59.1%
	남성	43.6%	64.9%	72.5%	77.8%	81.7%	84.0%	86.1%	84.0%
	여성	61.2%	76.5%	79.5%	79.7%	78.5%	75.5%	70.4%	40.7%

주: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 표현대로 미혼으로 표시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활용 필자 작성

2) 돌봄정의와 돌봄부담의 불평등한 쏠림²⁾

돌봄은 우리 삶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중심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segmental)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Tronto, 1993; 2013).

돌봄의 제도화로 비공식적,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이 공식적,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와 돌봄노동에 대한 인색하고 부당한 자원배분은 돌봄의 진정한 사회화를 제약하고 있다.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이 비공식적 영역에서 공식 영역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돌봄노동의 주요 담지자가 여성이라는 성별 노동분업은 공고하고, 비공식 무급 여성노동의 연장선상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시장가치 평가는 절대적 기준 및 상대적 기준에서 모두 형편없이 낮다. 가족 가부장제하 젠더분업으로 여성이 돌봄을 전담한 것과 같이, 돌봄이 제도화된 국가 가부장제하에서도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제공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돌봄노동에 내재된 불평등한 성별 돌봄책임 분담은 지속되고 사회적 인정과 가치평가는 여전히 낮다.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니즈에 대한 사회적 대응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능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돌봄제공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돌봄니즈에 대한 최소한의 충족만 인정하는 ‘절반(折半)의 사회화’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돌봄니즈에 대한 인정도 부분적이다. 사회적 돌봄에서 돌봄니즈의 다양하고 고유한 개별적 맥락에 대한 인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돌봄정책이 기능적 필요에 의해 돌봄의 제도화라는 외피를 갈아입고 오히려 기존 젠더질서와 계층구조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즉 현행 돌봄제도화는 저평가된 돌봄노동을 중하층 여성에게 편향적으로 전가시키는 계층 불평등, 성불평등에 기반한 ‘접혀진(가려진) 정의’로 유지될 뿐이다. 가시화된 돌봄영역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돌봄에 내재된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변혁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가치평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페미니즘 영역의 전향적 요구

2) 석재은(2018)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57-91

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돌봄니즈에 대한 사회적 자원배분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도 남성중심적 시민권 관점의 지배하에서 여성편향적 돌봄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평가절하(平價切下)되어 있다. 돌봄을 주변화함으로써 권력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해 근본적 도전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돌봄을 누리고 있다. 돌봄은 사회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기능적으로 처리될 뿐이다. 그러나 돌봄이 정당한 위상을 확보하게 되면 ‘누가 돌볼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평가절하된 돌봄에 기반한 사회질서의 정당성(正當性)이 도덕적 중심문제가 될 것이다 (Tronto, 1993; 2013).

3) 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민주주의³⁾

현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이들을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가 돌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현재와 미래 돌봄에서의 자유의 결핍,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도외시하고 있다. 돌봄은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심적 문제이다. 경제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돌봄문제를 중심에 두고 다루지 않는 한 불평등, 사회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돌봄 책임의 분담은 돌봄 의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돌봄이 특별히 취약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점에서 돌봄 책임의 보편성이 바탕하고 있다. 우리는 독립성, 정상성 담론에 익숙해 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존적 존재이며, 누군가의 돌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존재이다. 여기에서 돌봄의 보편적 권리와 돌봄의 보편적 의무 및 책임이 제기된다. 모든 인간의 삶 유지에 돌봄은 필수적이며, 모든 인간이 의존적 존재라는 의존의 보편성, 의존의 정상성을 전제로 할 때, 우리 모두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함께 돌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돌봄 책임을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이는 함께 돌봄(caring with)의 돌봄

3) 석재은(2018)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57-91

민주주의를 위해 돌봄 아젠다가 정치의 중심 아젠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Tronto, 2013; 김희강,나상원 역, 2014).

“돌봄책임을 분담할 때 민주정치가 중심에 있어야 하며, 돌봄책임을 분담할 때 민주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책임이 민주정치의 중심에 자리매김해야 한다(Tronto, 2013; 김희강,나상원 역, 2014).”

시민이 돌봄책임을 할당받는데 참여할 역량이 있다는 믿음, 돌봄책임 분담이 민주정치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국가가 돌봄니즈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민주적 다수에게 돌봄을 넘겨줘야 한다. 공적 토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함께 돌봄(caring with)이 정치적 관심사여야 한다.

‘함께돌봄 (caring with)’이 민주적 돌봄의 핵심어이다(트론토, 2014: 56). 누군가에게 불공정하게 돌봄의 책임이 분담되는 것은 부정의(不正義)하다. 모든 시민이 평등(平等)해지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불평등(不平等)은 민주사회의 중심적인 정치적 과제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민이 동료시민과 함께 돌봄(caring with)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트론토, 2014: 58).

3. 연구방법4)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부모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20명(비/이혼 15명, 기혼 5명)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1~2시간가량 1대 1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인터뷰이는 온라인(SNS) 및 지역 민우회,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통해 모집했다.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1명, 40대 5명, 50대 10명, 60대 3명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인터뷰이 선정시 주요하게 고려했던 조건은 결혼유무로서, 결혼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이 원가족 돌봄으로 다시 귀결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자 비혼여성의 비중을 높였다.

- 인터뷰이 기본정보

	이름	나이	돌봄기간	결혼유무	주요 내용
1	강수민	26세	6년	비혼	어머니가 급성백혈병 투병 후 자궁암이 발병하여 2년 돌봄 전담함. 돌봄과 학업, 아르바이트 3중고에 시달림. 지금도 부모 중 누군가 다시 아프면 돌봄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해외에 취업할 계획임.
2	김지숙	65세	5년	비혼	직장 퇴직 후 돌봄을 전담하게 됨. 어렸을 때부터 맏딸 노릇함. 어머니 치매 판정 전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했음. 현재 가족요양 중이고, 현장에서도 실제 딸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함. 지속가능한 요양제도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이은영	48세	18년	비혼	어머니 뇌종양 판정 후 수술, 입퇴원, 합병증 투병 반복함. 초기에는 일과 병행했고, 돌아가시기 전 2년은 돌봄에만 집중함. 퇴원 이후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돌봄 역할을 수행하면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 전문적인 돌봄노동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전은희	38세	3년	비혼	이십대 초반, 당시 40대 중반인 어머니가 뇌출혈로 투병함. 휴학 하고 1년 병간호함. 마비는 오지 않았지만, 섬망 증상 있었음. 퇴원 후 데이케어 센터에서 3년간 지원받음. 대학졸업 후 전담해서 돌보다가, 어머니 증상이 완화되면서, 현재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정기적으로 방문함.

4) 한국여성민우회

5	박선영	63세	9년	기혼	어머니가 노령으로 돌보게 됨. 데이케어 센터 이용 중이고 만족도 높음. 주변에서 주로 듣는 얘기가 '남편이 훌륭하다' 예전 같으면 강하게 주장할 일도 어머니를 모신 뒤로 주저하게 됨. 현재 손주도 돌보고 있음.
6	최주영	50세	14년	비혼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가 치매로 진단받기 전에는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였음. 1년 전 치매로 5등급 판정 후 재가요양 받고 있음. 고정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사회복지사,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전일제 일 구하고 있음.
7	이선희	50세	4년	기혼	어머니가 암으로 수술 후 휴우증으로 파킨슨 투병 중. 한 달에 반 정도 데이케어센터에 다님. 기혼으로 두세대 돌봄 및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 개인 시간 전혀 없음. 일, 가사노동, 돌봄 어느 쪽도 만족이 안 되는 상황임.
8	문희주	53세	3년	비혼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지만,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해왔음. 어머니가 몸이 약해지면서 본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함. 생활비 외에 돌봄 비용은 남자 형제들이 부담하고 있어서 돌봄과 관련된 의견을 내야할 때 담당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있음.
9	정주현	61세	15년	기혼	어머니가 당뇨 진단 받고, 현재 만성신부전 신장질환 말기판정 받음. 일주일에 한번 방문을 하고 매일 통화하고 있음. 본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엄마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힘들었음.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요양보호사를 빠르게 연계 받았음. 짧은 돌봄시간이 아쉽고 요양보호사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0	배혜영	49세	15년	비혼	어머니가 뇌출혈 발병 후 편마비 증상 있음. 혼자 있기 어려운 상황. 본인이 일하는 8시간 반 동안 요양보호사가 돌봐주고 퇴근 후 돌봄 전담함.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높지만, 돌봄이 당연시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요양병원은 돌봄보다는 '수용'에 가깝다고 느낌.
11	김은숙	51세	10년	비혼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 수술 이후 인지능력 저하가 함께 왔음. 오랜 시간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 함. 사회복지사와 장기요양보호사자격증 공부를 통해 어머니의 증상을 이해했음. 노인 퇴행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2	손은주	53세	3년	기혼	어머니가 노환으로 인한 고관절로 3년 투병함. 섬망 증상이 있어서 치매 4등급 판정받음. 데이케어센터 6개월 정도 이용했고 지금은 몸이 악화되어 입원한 상황. 돌봄노동에 대한 고민이나 힘들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음. 남편이 부양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력에 대한 고민이 있음.

13	박혜선	52세	3년	기혼	아버지가 심혈관 질환으로 투병함. 치매 초기 판정받았음. 주로 간병은 어머니가 하고 병원 통원이나 입퇴원시 보호자 역할 함. 10년 전에 장기요양사 자격증은 취득했고, 앞으로 부모님 건강이 악화되면 그룹홈을 직접 운영할 계획도 있음.
14	지숙희	44세	2년	비혼	아버지 폐암 발병 후 1년 6개월 투병. 결혼한 다른 자녀들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돌보게 되었음.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기계적으로 대하고, 보호자가 꼭 필요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의식 있음. 법적 가족이 아니라도 서로 돌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5	장영숙	56세	17년	이혼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고, 현재 재가요양 받고 있음. 배우자와는 오래 전 이혼했고 고정적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길게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고 웰다잉 교육,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6	진명주	48세	5년	비혼	외국에서 일하면서 오래 거주하다가, 어머니 돌봄을 위해 귀국함. 의식불명상태의 어머니를 2년 가까이 병원에서 간병하고, 이후 재가요양을 거쳐 현재는 데이케어 이용 중. 퇴원 후 직장을 다녔지만 돌봄 때문에 지속하지 못했고, 돌봄과 병행 가능한 직종을 알아보고 있음.
17	심희영	54세	10년	비혼	다른 형제자매들은 결혼으로 자연스럽게 독립했고, 부모님의 가계를 책임지다가 어머니 돌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됨. 오래 근속한 직장에서 부모님 돌봄을 배려해주지 않아 퇴직한 후, 현재 회사에서 장기재직 중. 노인돌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장기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게 됨.
18	현지은	58세	4년	비혼	외국에서 일하다가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아프면서 귀국함. 현재는 치매 중증. 얼마 전에 (본인)수급자 신청했음. 24시간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 생활비와 돌봄 비용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하고 있어서, 재가요양 기본 3시간만 이용 중
19	이명희	50세	5년	비혼	치매 발병한 어머니를 5년 돌봤음. 돌아가신 아버지 연금이 있어, 입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직장생활과 돌봄을 병행함. 가족, 요양보호사를 막론하고 1인이 돌봄을 전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있음.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돌봄을 분배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20	김명주	45세	5년	비혼	어머니가 지병이 있어 계속 아팠고 근래 크게 악화되어,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돌봄을 전담함. 1인가구를 오랫동안 유지했고, 앞으로도 유지할 생각임. 부모 돌봄을 하더라도 거리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4. 연구결과

1) 돌봄책임의 전가와 귀착: 왜 비혼여성인가?

비혼여성은 자타공인 가장 용이한 돌봄제공자로 인식되었다. 비교적 의사결정이 훌가분하고 개인의 결단으로 가능한 비혼여성에게 귀착되었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문제상황에 대해 빨리 공감하고 반응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현실의 객관적 복잡함보다는 문제상황에 대한 공감력이 신속한 반응을 이끌었다. 돌봄을 맡게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니즈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귀착되었다. 그 과정에서 동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돌봄을 맡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과감한 결단으로 일과 맞바꾼 돌봄, 생활기반을 버리고 택한 돌봄이 이루어졌다.

“나는 결혼을 안 했고 자유로운 몸이고, 그리고 엄마가 자녀들 키우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자식이 필요할 때다 됐구나, (다섯 형제지만) 그냥 내가 그 손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선택으로) 외국에 있다 들어와서 엄마 집에 들어가 엄마랑 지내기 시작했죠”(현지은/ 비혼, 58세, 돌봄기간 4년)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결혼해서 다 처자식이 있고 한데, 형편상 경제적으로나 뭐냐”(김지숙/ 비혼, 65세, 돌봄기간 5년)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있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거의 돌아가실 상황이라고 하니깐 최대한 빨리 와서...제가 간병을 했죠...비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게 다 어그러지는 상황이긴 했는데 들어왔고...다들 그만해라, 네 인생 살아라, 다들 요양원으로 그냥 의식이 없으신 채 모셔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제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 목숨 하나 구한 셈이 된 거죠”(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결혼을 안했고, 독립을 하기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책임지게 된거죠”(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누군가는 부모를 돌봐야하지 않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부모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그나마 가족 중에 제가 경제적으로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안했으니까. 물론 내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지만, 내 부모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을 케어를 해야 되겠다”

(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주변에 일 났을 때 케어하는 건 다 싱글 여자더라고요. 다 있는 잘난 아들들은 소용없다고 저희가 농담을 하는데. 40~50년 동안 감수성 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오빠한테도 부탁을 했죠...그러면 1부터 10까지 매뉴얼대로 짝 주지 않으면 엉뚱한 걸 해오거나 다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나 손이 많이 가요”

(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제가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 상황에서 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오빠들은 다 일하고 있었고 거기는 가족이 있고 저는 저 혼자였으니까 결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발적이었어요”

(최주영/ 비혼, 50세, 돌봄기간 14년)

“엄마가 쓰러졌을 때는 늘 1번이 저인거예요. 그래서...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물론 내가 옆에서 감당은 하지만...나를 거치지 않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하는데 나한테 너무 기대져있고 다른 사람들도 으레 나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우리집은 그냥 혼자인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건데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나한테 저렇게 기대기시작하면 나는 감당이 안되는거죠. 나중에 정말 엄마가 나빠졌을 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문희주/ 비혼, 53세, 돌봄기간 3년)

“남동생도 직업이 있고 아빠도 직업이 있고 저도 직업이 있고 여동생은 시험공부중이고, 올케는 전업주부이긴 했지만 애기가 어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게 된거죠.... 저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그게 오랫동안 뿌리 깊게...첫째가, 장녀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게 저한테 내재되어 있던 것 같고.”(배혜영/ 비혼, 49세, 돌봄기간 15년)

돌봄은 자연스럽게 여성가족원의 몫으로 할당되었다. 형제가 많아도 아들과 며느리보다는 딸이 돌봄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남자였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보험처럼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남자였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근데 사실 남자가 수발을 한다는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극한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기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남자였다면, 엄마가 나한테 같이 살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

(전은희/ 비혼, 38세, 돌봄기간 3년)

“아빠는 어째서인지 자동으로 논의가 되고, 거의 자연스럽게 언니가 맡게 된 것 같아요. 언니가 지방에 있는 보건소에 직업을 얻어서 엄마를 케어를 하게 되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주로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언니 힘드니까,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뭔가 제일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건 오빠한테 화살이 가지 않아요”(강수민/ 비혼, 26세, 돌봄기간 6년)

“저희들 생각하기에 며느리는 남이란 생각도 들고, 우리 딸들은 다 저희 생활권 안에 함께 살고 하니까 우리 셋 중에 누군가가 모시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일부러 내려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고 괜찮겠다 싶어서 서울로 모셨어요. 동생들이 먼저 10년을 모셨는데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할머니랑 함께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10년이면 할 만큼 했으니까 너는 수고했다, 그 대안으로 그 다음에 제가 모셨죠. 사시던 동네를 떠나는 건 노인께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모시게 됐어요” 박선영/ 기혼, 63세, 돌봄기간 9년)

“딸이 나밖에 없어서 의존도가 너무 많아요. 매일 전화를 드려야 되요. 기다리시니까. 그렇게 해서 짧으면 30분, 길면 40~50분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요....잠깐 깜빡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전화 와서 막 노여워하시고...시간이 다 돼갔는데 왜 전화를 안 하느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고, 매일 해야 하는 숙제 같죠” (정주현/ 기혼, 61세, 돌봄기간 15년)

여성이 일의 상태에서 비교적 유연하고 돌봄으로 인한 데미지가 적다고 여겨졌다.

“돈을 적게 벌고 경제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그만 뒀을 때 부담을 제일 적은 사람한테 가장 큰 부하가 오겠죠” (이선희/ 기혼, 50세, 돌봄기간 4년)

“제가 그나마 좀 유도리 있게 뺄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 (지숙희/ 비혼, 44세, 돌봄기간 2년)

부모가 딸에 대해 아들과 달리 당연하게 돌봄을 기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엄마가 아프면 첫째딸이 엄마 노릇을 하는거다,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그런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아프신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딸이 아니라 인간 개인으로서 저를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다 보니까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더 포로가 되는거죠... 돌

봄노동은 이게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처럼 상호적이거나 되 값을 의무가 없고, 좀 일방적인 돌봄을 요구하고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되 값을 계약적 의무가 없는 (거더라구요)” (배혜영/ 비혼, 49세, 돌봄기간 15년)

“엄마를 케어하기 시작한지는 일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도 되게 갈등을 많이 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시집가고 AS까지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이까지 봐주셨으니깐...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아프거나 케어가 필요할 때는 나는 해줄 수 없다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데이케어처럼 1대 다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때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텐데 불편하실 거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그런데 막상 내가 하려고 보니 아직 오십년을 더 살아야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일을 접는 거에 대한 갈등, 나중에 컴백을 해서도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을 계속 똑같이 할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일년밖에 안됐는데도 부모님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선희/ 기혼, 50세, 돌봄기간 4년)

“엄마가 돈은 아빠가 버실테니 니가 나를 간병해라,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안들었죠... 젠더차별이나 불이익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 안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길 하죠. 그리고 정말 남동생한테는, 남동생이나 아빠는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 노동이 불안해지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만 간병을 했고, 저는 그걸 넘나들면서 했기 때문에 눈치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좀 말도 듣고.... 내가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내 일을 희생할, 물론 희생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할 만할 건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 일에 대한 신념이 무엇보다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면 돈은 누가 주나요? 경제적인 이유도 크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전업주부로 살다가 저런 질환을 겪으면서 사회적 관계가 정말 끊어지는 걸 보고서는 사회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 싶기도 하구요.” 배혜영 / 비혼, 49세, 돌봄기간 15년)

2)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독박돌봄

비혼 여성이 일단 돌봄을 맡게 된 다음에는 돌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선한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돌봄을 하겠다고 자원하거나 타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돌봄의 주책임자가 된 이후부터 다른 가족원의 돌봄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사라졌다. 돌봄은 단지 처리해야 할 골치아픈 문제에 불과했다. 누군가에 의해 처리되기로 한 이후 급속히 관심권밖으로 사라졌다. 돌봄에 대한 소위 3무(無)가 작동하고 있었다: 무지(無知), 무관심(無關心), 무인정(無認

定). 돌봄 책임이 특정 누군가에게 맡겨진 다음에는 가족들 모두가 대부분 모른척 외면했다. 골치아픈 돌봄의 부담을 가족원 중 누군가에게 맡겨진 다음에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돌봄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에 대해 굳이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가족내 가장 권력자원이 취약하거나 공감력이 뛰어나 돌봄을 자원한 취약한 가족원에게 돌봄을 전가하는 것으로 돌봄의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으로 여기고 싶어했다. 돌봄을 맡기고 홀가분해진 가족들은 돌봄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체적 상황을 동반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에 무지하고 무관심하였으며, 당연하게도 돌봄과정에 대한 빈약한 상상력으로 인하여 돌봄을 떠맡은 가족구성원에게 제대로된 인정을 주기 어려웠다. 돌봄부담이 어떤식으로 구성되는지 알지 못했고, 당연히 돌봄을 맡은 가족에 대한 인정도 뒤따르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박돌봄이 되었고, 돌봄의 높이 되었다.

“돌봄 노동이 제일 힘든 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강수민/ 비혼, 26세, 돌봄기간 6년)

“제일 힘든 건 누구랑 나눌 수 없는 게 힘들구요.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옮겨야하는지, 하다못해 하여튼 뭐 하나라도 결정할 때 힘든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니까”(손은주/ 기혼, 53세, 돌봄기간 3년)

“2년 병원생활을 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2년을 저 혼자 했거든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퇴원을 했는데 가족에게 좀 오빠나 모셔갔으면 했는데 다들 안 된다고 하니까.....그 이후로도 재활병원을 3년”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네가 있는데 왜 간병인을 쓰냐. 정말 저는 인간에 대한 환멸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엄마의 형제들에 대해서. 자기네한테 피해 갈까봐. 경제적으로나 짐을 지게 될까봐 ‘그건 다 오로지 너의 몫이야.’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은희/ 비혼, 38세, 돌봄기간 3년)

“형제들이 한편으론 내가 좋은 일 하고 있고 내가 참 부모한테 소위 효도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경제력을 갖지 못한 데에서 오는 스스로의 자괴감일 수도 있는데, 돌봄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 이런 걸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우리 사회가 특히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마 저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 어쩔 수 없으

니까 하는 거지, 이런 느낌?”(최주영/ 비혼, 50세, 돌봄기간 14년)

“일 년에 한 번씩 오세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차라리 안 왔으면 그냥 잊고 사는 데 꾸역꾸역 오면서 속만 뒤집고 가죠. 명절도 아니고 그냥 오고 싶을 때 오는 것 같아요”(진명주/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초반에는 가족들한테도 섭섭하고 그랬죠. 내가 좋은 의도로 엄마를 섬긴다고 하긴 했지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초반에는 엄마가 치매초기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시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가 막 혈압도 올라가고 머리 마비 증세도 오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지금은 엄마가 중증으로 넘어가며 고집을 덜 부리셔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덜해졌는데...대신에 육체적인 건 힘들어졌죠.”(현지은/ 비혼, 58세, 돌봄기간 4년)

“딴 사람 손 닿는게 싫으신 거예요. 주말에 나도 좀 목욕도 좀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내 고객을 만나야되요 그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주말에라도 가야 하는데 (형제자매들에게)요청하면 아무도 안와요.... 다 직장을 다녀서 안 된다. 나도 직장 다니는데. 그래서 거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강제 수용시설이죠 종합병원은. 그래서 그런 공간에 엄마 혼자 두는 것이 저는 너무 끔찍했고 내가 만약 엄마라면 24시간 중에 되게 얼마만이라도 가족과 같이 있고 싶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였는데, 문제는 그게 집에 와서도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도 그게 구조가 고착화 되는 거예요. 주말같은 경우는 교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말에도 거의...남동생은 딱 한번 했었구요 그리고 아빠는 한번도 안했고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여동생이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낙상사고. 사람들이 여동생을 못 믿겠다. 저도 이제 불안하고 왜냐면 또, 팔이 어깨가 부러지셨어요. 더 더 힘들어지는거죠”

(배혜영/ 비혼, 49세, 돌봄기간 15년)

돌봄을 맡은 돌봄제공자는 직장을 잃거나 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 했다. 돌봄과 병행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돌봄제공자의 경제생활은 어려워지고 그들의 노후는 방치되어 있다.

“제가 엄마 아프실 때 제가 하던 일을 관렸었거든요. 삶이 확 변화되는 거죠. 가족 관계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 변화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또 그대로 있느냐면 거기에 따른 무언가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고 정신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누군가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확 걸리거든요”
(최주영/ 비혼, 50세, 돌봄기간 14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저는 가지고 있는 돈도 거의 다 써버렸고, 지금 직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독거노인으로 혼자 죽는 경우 고독사밖에 없겠구나...엄마가 돌아가시면 전세금 있는 거 그걸 내가 풀꺼 해야겠다. 큰 건 아니지만. 1억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1/n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하지 않아요? 1억 좀 안 되는 돈을 계속 1/n 주장하고 있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너는 엄마 집에 얹혀사는데 돈도 안 내고 살잖니.’”(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비를 낼 때 저를 빼줘요.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내는 포션도 있고 감당하는 부분도 있고 재정상태가 충분하지 않은걸 아니까 나는 빼줘요. 병원비를 낼 여력이 실제로 없기도 하고.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큰돈이 들어가는 것에서는 나누고 그러나 일상에서 내가 만약에 생활비를 쓰면서 필요한 건 제가 하고. 저도 신분이 불확실하니까, 저는 저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고히 했었어야 하는데 묘하게 엄마페이스에 말리고 엄마랑 싸우기 귀찮으니까 제가 그거를 양보를 하면서 오래 생활비를 안내놓으시는게 되가지고”
(문희주/ 비혼, 53세, 돌봄기간 3년)

게다가 고맙다, 수고한다는 인정도 받지 못하는 독박돌봄은 상처가 되고 있었다.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다.

“뭔가 자꾸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조차 안 먹게 되거든요.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고”(강수민/ 비혼, 26세, 돌봄기간 6년)

“치매 오시고 뇌를 다치면서 생각이 50~60년대로 돌아간 거야. 그때 생각. 남아선호사상 그걸로. 장남 아들 위주. 그래갖고 돌보는 건 하나도 빛이 안 나....아들이 한 번씩 오면 기고만장하시가지고 오빠 밥 차려내라고 그러시고”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엄마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전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게 ‘자식이 보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전은희/ 비혼, 38세, 돌봄기간 3년)

“엄마가 나의 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나의 공간인 걸 존중을 안 하는 거죠. 내 물건.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쓰면 어떡니?” “그거 아니라고!!” 엄마가 물건 쓰는 건 상관없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서운한 거예요”
(강수민/ 비혼, 26세, 돌봄기간 6년)

3) 고립된 독박돌봄, 끊어진 돌봄연대

돌봄을 전적으로 맡은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돌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적으로 돌봄부담을 맡는 것은 돌봄제공자에게 형벌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는 덫에 걸린 느낌을 준다. 불평등한 돌봄의 쓸림은 돌봄제공자를 소진시켰다. 키테이(Kittay)가 강조했던 돌봄제공자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는 돌봄제공자를 소진시켰다.

“가족이 쓰러졌을 때 같이 멍치는 가족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짐이 다 한 사람한테 독박 돌봄이고...나중에는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 돼서 자기들이 시간 내서 돌봐주는 거를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미리 얘기해야지. 너는 놀고 있는데 직장이 있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한가하지 않지.’”(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친구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24시간 엄마랑 있어야 되니까 만나러 와주는 사람은 오산까지 와주는 사람은 보전하지만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건 없어졌죠. 그런 관계도 다 이제 단절되고”(현지은/ 비혼, 58세, 돌봄기간 4년)

“모든 게 단절이 되고 엄마한테 24시간 매달려 있어야 되고. 주말에 누가 와서라도 돌봐주면 좋은데 큰언니는 아예 손 떼고 그러면서 오히려 ‘너는 엄마 집에 사니까 너 월세 내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왜 엄마한테 얹혀사느냐’ 이런 식으로 인간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깐 ‘그럼 내가 들어와서 살면서 한 번 엄마 돌보면서 너도 월세 내면서 살아볼래? 그렇게 좋아 보이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등이...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결정은 다 제가 했어요. 언니 오빠가 있었지만 왜냐면 그들은 떨어져사는데다가 한발 늦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제가 전적으로 가졌죠...(수술 앞두고) 형제들 모여서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을 좀 모아달라...그런데 내가 결정해라... 그냥 다 맡겨놓으니까 누구도 중간에 어떤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그래서 결정조차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형제들에 대한 배신감, 서운함.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관계는 이제 끝나는 거다...언니나 오빠들은 미안하기는 하고 면목없고, 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달힌거죠”(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시설을 보내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제가 병

원에 간병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너 왜 그러고 있니. 그건 엄마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엄마는 내가 네 인생 살기를 바라지, 네가 선택한 거다. 너 고생해.’ 오히려 주변 친척 분들은 ‘네가 엄마 살렸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가족들은 ‘언제까지 병원에 그러고 있을 거니? 엄마가 네가 그러는 건 원하시진 않으실 거야. 네 인생 어떻게 살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내색을 못 하는 거죠. 힘들다고 해도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네가 선택한 거야.’ 그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네가 고생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 거야. 언제까지 엄마 그러고 모시고 있을래.’ 그러면 진짜 박살내버리고 싶은 입을 쪽 찢어버리고 싶은.”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경험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제는 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할 만큼 했어요”

(전은희/비혼, 38세, 돌봄기간 3년)

“엄마 때문에 어디를 움직이질 못 해요. 어디를 뭐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건 생각지도 못 하고 어딜 가도 항상 머리에 이게 있고 준비가 다 돼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맡겨놔서 동생이 하루 보면 ‘아유 언니, 나 힘들어서 못 해.’ 해요”(김지숙/ 비혼, 65세, 돌봄기간 5년)

“바깥에서도 일이 굉장히 힘든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도 여지없이 뭔가 해야하는 일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잠시 도망가고 싶다 하고 버거울 때가 순간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은 안느끼지만 버거움은 굉장히 느껴요...개인시간이 없어요. 전혀 쓸 수가 없는 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려고 하면 마음이 벌써 힘들어져.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엄마한테 가서 뭘 해야지 그게 딱 걸리니까 그 이후에는 개인시간이 1도 없어요”(이선희/ 기혼, 50세, 돌봄기간 4년)

돌봄제공자는 가족에게 병원비, 돌봄 비용을 가족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부담되고 눈치보인다고도 했다.

“어쩔 수 없어서 병원 가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고 이런 건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었다. 이걸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도와줘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건데도 돈 얘기할 때는 늘 미안해요”

(현지은/ 비혼, 58세, 돌봄기간 4년)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이는 학대로 이어질 수 있고 때로는 동반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했다.

“아무리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적으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나가서 운동하고 하다보면 좀 잊어버리고 생활하고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죠”

(김지숙/ 비혼, 65세, 돌봄기간 5년)

“나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데...마음이 급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에 어머니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손잡고 빨리, 엄마입장에서는 너무 힘든거죠...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종의 학대구나. 어떤 때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나도 힘드니까 모른체해요. 방관, 무시...이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학대가 아닐까.... 내가 엄마를 제대로 케어를 하겠다 대신해서 부모를 돌보겠다 생각하고서 하고 있는 짓은 엄마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거죠”(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가족들이...정말 열 받고 정말 죽여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엄마랑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도 많아요. ‘이러다가 너네 어느 날 뉴스에 날 수가 있어, 엄마랑 나랑.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100% 이해되는 게...집에서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오고 사회관계가 안 되잖아요...끊임없이 지하로 땅을 파고 고립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학대하고 그런 분들이 100% 이해는 돼요.”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가끔 뉴스에 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이 구타를 했다, 폭력을 했다, 이런 게 나오면 저는 한편으론 좀 이해가 돼요....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일의 압박으로...한 시간 동안 네다섯 명을 다 밥을 먹이고 치우고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빠릿빠릿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욕이 올라올 수.....저도 저희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엄마, 좀 해보자.’ 하면서 하는데, 생판 모르는 남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이 사람들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한편으로 20~30%는 이해돼요. 너무 힘들었구나. 너무 스트레스에 꽂차있구나”

(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4) 많이 부족한 사회적 돌봄

돌봄 제도화로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돌봄부담은 크게 남아 있다. 돌봄 제도로 해결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가족돌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돌봄이다 보니 양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바도 상당히 많았다.

“세 시간으로는 보호자가 어디 외출도 할 수가 없어요”
(현지은/ 비혼, 58세, 돌봄기간 4년)

“재가를 받아서는...도저히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데이케어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다들 1등급이시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1,2등급인데 요양원에 보내시지 왜 모시고 계시느냐 의아해하시고”

“재가를 할 때 힘든 사람들은 네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여덟 시간, 일곱 시간 쓰면 가능해요, 그만큼의 투자를 해주든지. 여덟 시간 쓸 수 있게끔.”

“병원에 있을 때는 엄마만 돌보면 됐지만 집에 오니까...일이 두세 배 되니까 거의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환자를 돌보고 가사노동을 다 함께 하면서 특히 식사 준비를 하루 세 끼를 하는 게. 병원에 보내는 동안이라도 쉬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재가서비스 하면서 그 분이 엄마 모시고 재활치료하시고”

“아침에 오셔서 병원에서 네다섯 시간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 분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시고 모시고 오고. 그동안에 (저는) 음식 준비하고, 보내놓고 뒤돌아서면 와 계셔요. 쉬는 시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음식 준비하고 먹은 거 치우고 이러면 금방 와 계시고”

“재가를 하면서 회사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분을(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침에 엄마 식사 드시고 나갔다가 제가 점심 때 회사를 가까운 데를 구해서 점심 때 와서 엄마 식사 준비를 하고 차려드리고...제가 하루 종일 쓰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그 분 네 시간밖에 못 하니까 1시에 오면 한 시간 엑스트라로 쓰더라도 6시. 그럼 병원가서 치료받고 모시고 오는 시간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6시 정도 가시면 저는 대충 일 마치고 6시 반, 7시 오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죠”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안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잠가놓고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시니까. 그럼 감당이 안 되잖아요...일을 하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가정요양을 제가 하고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나와서 일을 하려면 문 잠가놓고 밖에서 못 나오게 안에서 열쇠를 따로 맞췄어요.”
(김지숙/ 비혼, 65세, 돌봄기간 5년)

“정부차원의 대책이 정말 필요하겠다. 왜 치매환자를 돌보던 사람이 죽이고 같이 자살하는지 제가 겪었어요”(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맞춤돌봄이 허용되지 않는 경직적인 사회적 돌봄도 아쉬웠다. 특히 주간보호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돌봄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데이케어는 한 달에 20일 정도는 해야지 거기서 받아주지 일주일이나 열흘만 해가지고는 받아주질 않아요”(김지숙/ 비혼, 65세, 돌봄기간 5년)

“월, 수, 금만 갈 수도 있고 좀 그런 융통성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더 딱딱해져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들어와서 그러면 왔다가 나가서 두세 시간만 재활치료를 받고 들어오면 안 되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있으시고 좀 거동을 하시면 저는 그런 분들은 시설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도 있고 식사 해결도 되고 인지가 있으니까 즐겁게 살 수 있어요...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인형처럼 누워 있다가 밥 때 되면 밥도 그냥 떠먹여 주는 밥 대충 먹고 다시 눕고. 그 생활을 몇 십 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생 마지막을. 그래서 시설은 아니었고 1:1로 재가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도저히 사회생활이 안 됐고. 거기서 데이케어를 보내라. 데이케어는 재활치료가 안 되잖아요. 한 명을 여섯 명이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도 3등급, 4등급 주로 하시는데...1년이 다 되는데 안 불러서...(1등급이라고) 원래 법상으론 차별을 두면 안 되죠. 순서대로 부르는 게 맞는데 말만 그렇지 연락이 안 오고”

“제가 데이케어를 보내보니까 가능하면 데이케어가 맞아요. 제일 좋은 건 데이케어를 보내면서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데이케어를 좀 자유롭게. 데이케어를 한 번 들어가면 운동도 못 하고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보내니까 굉장히 인지가 좋아졌어요. 방문재가는 1:1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케어만 해. 기저귀 갈아주고 밥 해주고 끝. 그 사람이랑 어떤 interaction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데이케어는 사회생활이 돼. 그리고 1:1을 보면 내가 엄마 돌보다가 화도 나듯이 1:1을 보내놓으니까 내가 감시가 안 되잖아요”(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제도의 모든 정보를 개인이 오롯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런 다음 피해는 개인에게 다시 돌아온다.

“제가 재가를 쓰다가 데이케어를 썼잖아요....변동이 됐을 때 어떻게 내용이 변동되었고 수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비용은 이 정도 될 거라는 그런 공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게 없어요...20일 여덟 시간을 못 채운 거예요. 한 시간이 부족한 거야. 날짜는 20일이 맞는데 하루가 여덟 시간이 안 되고 일곱 시간 반인가 15분, 20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다 토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서비스도 상품인데 어떤 서비스가 바뀌면 정확히 공지를 하라고. '네가 만약에 재가 서비스를 하려면 20일 여덟 시간을 꼭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할증이 안 되고 네가 재가서비스의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없다...지금 30만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급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고 경제적인 데미지를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대요"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장기요양제도 운영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복지용구는 대표적 사례이다. 가족 요양보호사 요양을 요양기관을 거쳐 지급하는 것도 비용누수가 발생한다.

“복지용품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요....밖에 나가면 5만 원인데. 15만 원 뺏쳐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대부분 그 파시는 분들이 본인부담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 쓰면 내가 1만5천 원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가격 자체가 합리적으로 만들면 괜찮은데 시중에서 5만 원이면 사는 걸 15만 원 책정해놓고 거기에서 15%인 2만 원을 내래. 근데 업체에서는 '너 2만 원 안 내도 되니까 부담하지 마. 우리가 그냥 공짜로 줄게.' 이런 식이야. 그 돈이 얼마나 새고 있는지 정말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해요“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우리인데 중간에서 서류상 일이나 그것만 해주고 중간에서 25-30% 떼어가니까, 그게 너무 많이 떼다 보니까 요양사들이 힘든 거예요. 가정요양 같은 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지숙/ 비혼, 65세, 돌봄기간 5년)

“국가가 개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건 못 믿겠으니 중간 단체를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민간기관이 하는 일은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가정요양에 주는 돈이 정말 의미 없는 돈을 주더라고요. 작은데 그것도 심지어 수수료를 중간에서 엄청나게 떼더라고요”(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평판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을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요양보호사 교육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장기요양보호사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지나고 우리는 그대로 좀 인내한다든가 그런 걸 좀 참고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거 안 하죠. 돈도 안 되고 돈이 되면 들어와요. 그런데 돈도 안 되고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

요?...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비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걸 못 맞추는 사람은 못 해요. 그리고 이거는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은 못 해요. 돈 보고 들어와서는 못 해요. 이걸 내가 내 부모를 모시고 엄마가 하고 부모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걸 돈을 목적으로는 못 해요.”(김지숙/ 비혼, 65세, 돌봄기간 5년)

“요양보호사들의 좀 더 교육을. 왜냐하면 서로가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바꿀 수도 없고 서로가 친밀감이 생겨버리니까 늘 와서 계속 자기 식구들하고 통화하고 누구하고 통화, 엄마가 가장 미워하는 물건이 스마트폰이에요. 자기하고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정주현/ 기혼, 61세, 돌봄기간 15년)

“요양보호사 교육. 재보수 교육내용이 정말 의미 없어요....제가 요양보호사로서 받고 싶었던 교육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와상 환자를 옆으로 눕힐 때도 조금 기술이 있으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힘 배분과 노하우에 따라서 허리에 무리가 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하던 저 같은 보호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친목회하고 행사하고 그러는 순간 요양보호사 스스로 질들이 ”
(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사회적 돌봄은 관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점이 있다.
신체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

“요양사랑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숨통이죠. 딸하고 있으면 딸은 스트레스도 부리고 잔소리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러지만 오시면 자기 직업이니까 최대한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죠. 그 분이 오시면 그래도 화투도 같이 쳐주고 얘기도 하고 목욕도 해주고”(현지은/ 비혼, 58세, 돌봄기간 4년)

“신체적인 돌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이라던지 사회적 관계망들을 되게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어찌됐건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장기화될수록 환자들이 우울증이라던지 그런 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고 가족들도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보니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지잖아요. 이럴 때 이런 상담 서비스라던지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해요”
(배혜영/ 비혼, 49세, 돌봄기간 15년)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말 필요해요. 치매환자가 발생한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한 것 같아요”(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한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치료로 인한 경제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치료비 자체 보다는 음식이나 잠을 자니까 입원해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왔죠”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병원비는 암 보험은 중증환자 등록하면 병원비는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정말 비싸지 않아요. 중증환자 등록을 하면 병원비 자체는 부담이 없는데 생활비가 문제였던 거죠”(지숙희/ 비혼, 44세, 돌봄기간 2년)

“사실은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죽지는 않아요. 돈이 어정쩡하게 있으면 거덜 나요. 어떤 의미냐면 중증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10%밖에 안 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사실은 되게 잘 돼있어요, 일 년에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200인가 300 넘으면 다 국가에서 해줘요. 무조건 최대한 일 년 본인부담금 200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병원 입원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은 간병비와 이송서비스 비용이다.

“(간병인을 안 쓰신 거는?) 경제적인 이유죠. 한달에 300만원,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합의를 해서...한 달에 250을 누가 대요”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 간병인비용은 오롯이 우리가 내야 되는 현금인 거고. 집에 왔을 때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식비, 이동한다고 했을 때 교통 시스템. 2014년도인가에는 정말 택시를 쓰고 싶어 등록을 했어요. 예약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정해야 돼요. 병원에 close되는 시간을 우리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대기시간과 그러면 그 상황에도 다시 콜 요청하면 택시 기다리는 게 서너 시간이고요. 안 올 수도 있고요. 그 전날 신청해도 내일 가봐야 압니다, 심지어. 이걸 뭐야? 생색을 내는 건가? 화가 나더라고요”(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돈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시간이. 비슷한 시기에 다 등급갱신을 하다보니까 환자들이 되게 많이 밀려있는 데다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려면 보통 한 시간은 대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반나절 이상을 다 잡아먹으니까 제가 다른 업무를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배혜영/ 비혼, 49세, 돌봄기간 15년)

5) 돌봄경험 과정에서의 깨달음과 성숙: 의존의 정상성과 인간의 존엄성

돌봄 과정에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새삼스런 깨달음이 있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경험이었다.

“순간순간 정말 힘들 때는 있었지만 삶의 과정이 이런거구나 큰 틀에서 접근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견뎌내지게 되더라고요” (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어쨌든 지금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나를 돌보는, 가족을 돌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박선영/ 기혼, 63세, 돌봄기간 9년)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힘들지만, 이제 부모도 나이가 들면 신체가 아이처럼 정신도 점점 아이가 되니까 거꾸로 내가 엄마를 케어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엄마한테 내가 엄마역할을 해드리는 거죠...프레임을 바꾸고 나니까 그 부분이 훨씬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 같은 경험을 겪지 않기 위해 누구나 다 늙어가고 나이 들면 부모한테 도움을 드려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언을 좀 해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좋은 공부 가 됐어요” (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언어 능력하고 인지 능력이 달라서...서너 살짜리 미운 떼쟁이 같은 미운 다섯 살...엄마는 자식들한테 ‘집 되면 안 된다’가 세상 목표였는데 사람 인생 모르는 거예요. ‘집 되면 안 된다’를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 이렇게 힘든 짐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별로 인지를 잘 못 하시고. 그 정도까진 아니신데 ‘고맙다, 고맙다’ 하시면서도 좀 안 도와주면 ‘너는 열 달 동안을 배에 담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모시는 거예요”(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쌈박질 해봐야 저 세상가신 부모님이 좋아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냥 내 몸 하나 희생하면 되지. 근데 희생으로 끝나면 계속 이게 한으로 사무칠거예요...저는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해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입장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장례 치루고 첫 번째 절대 이제 누군갈 책임지지 않을 거야, 내 삶에만 충실해야지, 두 번째는 더 잘 해드렸으면 좋았을걸,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하길 잘했다” (심희영 /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삶의 질을 생각하면 집에서 모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은 힘들지만 집에서 모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요양원에 모시더라도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짐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엄마가 안 가시려고 할 거예요.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요양병원에 갔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고려장인 것 같은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방이 한 방에 8명에서 많은 덴 11명 이렇게 있는데 보호하시는 분들이 다 조선족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기저귀 갈고 이럴 때 그러니까 정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엄마를 모셔놓은 상태에서 정말 아닌 것 같은 거예요”(장영숙/ 이혼, 56세, 돌봄기간 17년)

“근데 엄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설을 보내면...아예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식물인간처럼 천장을 보고 침대에 누워서 몇 십 년이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가실 것 같은 거예요.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제가 모시다가 저희 엄마가 요양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돈을 다시 벌어야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사 드리고 치료도 받게 할 수가 있어, 엄마를 버리는게 아니야’...갈 때마다 요양원 휴지 두통은 쓰고 와요. 우느라고, 요양원에 보내 놓고. 그래서 버림받았다라는 하시는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간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자주보고 스킨십. 그래서 가면 이제 안아드리고 진짜 한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게 되고 엄마 사랑해, 옛날에 내가 못되게 군거 말 막한 거 그런 거 생각날 때마다 사과도 하고, 그 시간 요양원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이렇게 그걸 좀 풀어낼 수 있게,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거”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보호자가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병원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보호자가 잘 찾아오지 않는 환자는 아무래도 소외되요”
(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그런데 사회적 돌봄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민감성은 많이 아쉬웠다.

“제가 아쉬운 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 어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공부하시고 직장 잡아서 그냥 직장인 거예요. 사회복지사 분들도...요양원을 보내시지 그러시냐, 다들 너무 쉽게 하시거든요”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인간적인 돌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돌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돌봄은 재앙일 수 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게 350이든 400이 의미가 있는 환자가 있고 의미 없는 환자 있어요....그냥 눕혀서 기저귀 채워갖고 그냥 기저귀 갈고 천장보고 그것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더 오래 사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일정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15년 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거는. 가족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엄마의 삶도 인간적인 삶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 추가가 되고”
(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요양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보호자는 믿고 맡기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저렇게 지내고 있겠구나’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우리 엄마 같이 치매환자는 일어나면 넘어질까봐...안 일어나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방치되겠구나,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금방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내 한계를 넘어가서 어쩔 수 없어서 요양원에 가신다. 이르기 전까지는 못 보낼 것 같아요”
(현지은/ 비혼, 58세, 돌봄기간 4년)

“요양병원을 8~9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가장 그 당시에 잘 되어있다는 경기권의 분당 쪽으로 내려가는 그 곳이 시설이 잘 돼있고 요양병원인 곳을 갔는데 월비용이 350 그 당시에. 그런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요새도 서울 성모병원 가면 호텔처럼 아주 깔끔하잖아요, 병원들이. 그런데 굉장히 깔끔한 감옥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깔끔한 굉장히 넓은 공간에 엄마의 공간은 한 평밖에 없는 거죠. 침대 안에.....돌아보고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 어머니 퇴원을 저희 집으로 시킨거예요”(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병원은 정말 단체생활이어서 개인 프라이버시 없고 어찌됐건 집만큼 편한 곳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물론 굉장히 고급지고 비싼 요양원 같은 경우는 다 해주고 그런덴 좋긴 하겠지만 보통의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이 종류의 시설은 정말 그냥 탈출하고 싶은 시설이에요”(배혜영/ 비혼, 49세, 돌봄기간 15년)

“재활전문병원....노인성 약간 좀 천천히 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조금 더 케어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 해주기엔 이 사람들 너무 바쁜 것 같다”
(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동네 할머니들 요양병원에 가면 다 못돌아오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몸서리치게 싫어하세요. 미리 얘기는 해두지만 완강하게 안간다하고 하시죠”
(정주현/ 기혼, 61세, 돌봄기간 15년)

“(노인들이) 약을 먹고 오래오래 살아요 행복하지 않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그게 우리 미래라고 생각하면 진짜 우울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
(이선희/ 기혼, 50세, 돌봄기간 4년)

죽음의 과정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려웠다.

“임종 징후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해보고...아쉬운 건 아이들이 100일 때 어떤 단계로 해서 커 가는지를 짚 하는데...죽음의 단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돌봄제공자들은 돌봄은 상호이해가 깊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돌봄경험의 공유속에서 돌봄연대가 구체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화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였던 것 같고 저는 되게 돌아보면 참 좋은 배움의 시간이어서 감사하고”

“정말 온몸에 물기가 빠진 자그마한 아기인 채로 계시다가 가시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저의 사는 것에 대한 성찰도 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뭘 먹다 흘렸어, 내가 그렇게 흘리지말고 조심하라고 엄마 이거 대줄까 그랬는데 우리엄마가 싫다고 해갖고 했는데 그랬더니 신경질을 막 부렸더니 우리 엄마가 영혜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은 산송장이 아니고 살아있어서 이렇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을 후벼판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생명이 있는거는 항상 부산물을 흘리게 되어있어, 비듬도 떨어지고 뭐도, 이게 지저분하다는거는 생명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용인데 내가 그런거를 일로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면 우리엄마보고 살아있지말고 죽으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거구나, 내가 그때 그거를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게 너무 감사한걸로 마음이 돼서 그래서 우리엄마 항상 께안아주고 사랑한다 이려고” (김은숙/ 비혼, 51세, 돌봄기간 10년)

“사실은 엄마를 모신 거가 어쨌든 저의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누구도 뭘 해야 된다고 한 건 없었고, 제가 생각한 책임감, 거대한 사회 내에서 제가 40 평생 자라오면서 암묵적으로 나의 몫이다 라고 한 것도 일정부분 있기도 하겠쥬.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관계고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로 서서히 전환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마 곁에 온전히 있어주자, 나를 온전히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내가 온전히 있어주자.....사실은 상황 닳쳤을 때 한

2년 동안은 좀 해야 되는 거에 좀 벅차면서 막 한 거죠. 그러면서 힘드니까 또 이제 거기서 힘든 게 짜증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회의도 들고 누구를 위한 건가....내가 이만큼 희생한 거야, 그런 걸 갖고 있는 순간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는 내가 할 만큼만 하자, 라고 저를 내려놨어요. 다시 깨달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그냥 할 수 있는 선으로 하자 라는 걸 배우게 됐고”(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오빠가 쉬는 기간 동안에 돌봐라, 얼마나 좋은 기회냐. 병원에서도 직장 때문에 못 했는데 잠시 직장 바뀌는 상황이니깐 그때 엄마를 돌보면 오빠도 좋고 나도 그 동안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고”(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지금 내가 엄마를 케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뭔가를 막 벌려서 하는데 그 돈이 온전히 엄마한테 간다기보다 뭔가를 통해서 또 나가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피곤한 채로 저녁에 와서 엄마를 잠깐 주무시기 전에 잠깐 맑은 정신이 있으면 30분 정도 보고 한두 시간 보고 자고 또 아침에 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나는 나대로 피곤하고 엄마를 볼 시간도 많지는 않고 이게 뭔가. 뭐하는 짓이지? 라는 순간이 문득 들면서 그냥 내가 하자 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땀어요”(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돌봄경험을 통해 자신의 돌봄에 대해 준비했다.

“저는 나에 대한 준비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의존을 하지 않도록 해놓고 심지어 아프면 간병인도 부를 수 있게. 치매, 다 해놨죠. 사실 인지능력 없 어지면 어찌겠어요. 그 대신 제가 누구하나 힘들게 하고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 내가 결정을 하겠다”
(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6) 가부장제 균열의 조짐

공고한 가부장제하에서 유지되던 돌봄의무는 균열이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가부장적 권위를 확인했으며, 의식의 변화를 발견했다. 며느리에 대한 돌봄기대는 크지 않았다. 법정가족 며느리보다는 원가족 딸, 아들이 돌봄의 주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면서도 보호자, 대부분은 딸이에요 며느리 없어, 시집 간 딸이라도 와서 그거를 하죠”(김은숙/ 비혼, 51세, 돌봄기간 10년)

“저는 새언니한테 돌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집 딸도 자기 엄마 돌봐야죠....이건 품앗이 관계인 것 같아. 아들이 돌보는 게 맞지. 며느리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나는 아들이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우리나라 가족도 문제인 게 왜 며느리한테 맡기는지, 며느리는 무슨 죄냐고요 내 부모도 아니고, 그리고선 맡겨버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안하면서”(심희영/ 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딸이니까 하지, 며느리는 못 모셔요. 엄마니까 어느 때는 짜증나니까 실랑이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느 때는 하지 못 하게 하면 욕을 해요. 폭력적인 것도 있고 약간 우울증세도 있거든요, 치매가”(김지숙/ 비혼, 65세, 돌봄기간 5년)

“피도 안 나는 며느리한테 어머니를 맡긴다는 건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서 그래도 여성이니까 내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실 거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도 마침 거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일단 다 안 계시다는 게 저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는 데 많이 도움을 주긴 했죠...그런데 제가 늘 약자가 된 느낌, 남편한테 뭘 요구할 때 약간 주춤하게 되는 그런 건 있어요. 엄마 문제가 아니었으면 좀 더 강하게 나를 주장하고 밀어붙여도 됐을 상황을 한 발짝 물러서게 되고 그런 건 좀 있죠.”(박선영/ 기혼, 63세, 돌봄기간 9년)

“며느리한테 뭔가를 권하는 집은 아니고 아들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밖에 없었죠. 며느리들한테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가 맡고 있으면 제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두세 배 될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저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주죠. 모든 주변에서. ‘왜 그걸 너 혼자 맡아, 너희 형제가 다 나눠야지.’ (그런데)나눌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최주영/ 비혼, 50세, 돌봄기간 14년)

“엄마가 오빠, 며느리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해하고. 왜냐면 아픈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미안해 하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염치없어하시고, 이제 오는 것도 어렵고, 오로지 딸 인거예요”(정주현/ 기혼, 61세, 돌봄기간 15년)

7)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 권리를 지키는 공동체에 대한 상상 : 함께 돌봄을 위한 필요조건

함께 돌봄이 필요하다. 함께 돌보는 느슨한 돌봄연대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도 독박돌봄이 되지 않도록 돌봄부담으로부터의 거리 유지와 심을 제공해야 한다. 성찰을 통한 성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적정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육아도 아빠 참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돌봄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요”(진명주/ 비혼, 48세, 돌봄기간 5년)

“자식이 다섯이나 되는데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케어를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엄마가 혼자 힘들기 때문에 다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섯이어도 힘들더라고”(박혜선/ 기혼, 52세, 돌봄기간 3년)

“아빠가 아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빠를 돌보고 그 다음에 엄마를 돌보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은 ‘가족 공동체가 최고야.’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가족은 확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다른 미혼 친구들이랑도 뜻이 맞으면 같이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없다. 그게 문제인 것 같긴 하다.’ 생활동반자법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확실히”(지숙희/ 비혼, 44세, 돌봄기간 2년)

“저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너보고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오빠들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결정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한 것에 대해선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올케들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요. 그것도 재작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오고 싶어 오는 것이 좋은 거지,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작위적이다 생각해서 미웠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주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오빠한테 얘길 했더니 올케가 흔쾌히 진작 그럴 걸 그랬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주를 정해놓고, 제 동생들도 가까이 있는 동생은 제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좀 떨어져있는 동생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돌봐주고, 특별히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길 하죠”
(박선영/ 기혼, 63세, 돌봄기간 9년)

“제가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독박으로 돌봄은 아닌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가 와도 기준이 낮아져가지고 올해부터 3시간 밖에 안해주잖아요. 근데 말이 그렇지 치매

3급이면 혼자 외출도 못하고 혼자두면 안되는데 하루 3시간이라구요. 그나마 전에는 4시간이었는데. 돌보는 사람의 인생이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시간까지 가능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버틸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거죠. ...나이를 먹었을 때 엄마처럼 저렇게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삶을 사는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가지는 그거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필요하구나 그게 꼭 가족일 필요는 없지만 그 관계가 필요한거죠 친구가 필요한거죠. 네트워크가 필요하구요” (문희주/ 비혼, 53세, 돌봄기간 3년)

돌봄을 경험한 사람들은 본인의 노후 돌봄을 생각할 때 한결같이 함께 돌봄을 나누고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다가 저출산이어서 형제들도 없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 오래 사시잖아요. 병든 채로 오래 사시잖아요. 오래 사는 걸 어떻게 그 가족이 다 완전히 책임지는 가족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혹은 정서적으로는 더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사실 저는 정서적으로도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전은희/ 비혼, 38세, 돌봄기간 3년)

“엄마를 30분 거리에 모시면서 아쉬움이 느꼈던 게, 아파트마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아파트에 유희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거나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주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파트타임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가까운 곳에 내가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모셔올 수 있다 라든가 그게 안 되면 그 분들이 우리 집까지 모셔다 주시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초등학교 같은 데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동네에서 애들이 가서 같이 놀아도 드리고 그런 것들은 참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격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운동장시설도 같이 이용하고 학교의 꽃밭도 같이 돌아볼 수 있고 애들이 와서 자원봉사라는 건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거짓말 자원봉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와서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 모시고 꽃밭 돌아보게 하고 저는 그런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노인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좋겠다는 거죠...우리 엄마가 손주가 오시면 반짝 살아서 서너 시간을 거실에서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빠 내외가 오면 절대로 방으로 안 들어가세요, 하루 종일.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또래들끼리 그런 시설이 아니라” (박선영/ 기혼, 63세, 돌봄기간 9년)

“주변에 마을이든 대가족이든 좀 이렇게 점점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돌봄자 곁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부담 안 되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필요한 거 없냐. 도와줄게. 이런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상대.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되든 안 되든 너의 요구가 이래? 그럼 어떻게 해 줄까? 라든가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엄마한테 집중할 수 없고 일도 상대적으로 집중 안 되고 집안 식구들한테도 내가족들한테도 어느 것도 흡족하게 내 마음에 닿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게 되게 진짜 예술인 것 같더라고요...사실 고령사회에서 노인돌봄의 문제를 개개인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이건 좀 국가나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선희/ 기혼, 50세, 돌봄기간 4년)

“여자 노인들 공동체. 여성노인 공동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노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도 서로 의지가 되면 좋겠는데 정서적인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장영숙/ 이혼, 56세, 돌봄기간 17년)

“맘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고 싶어요. 생협이면 더 좋고 아니면 마을 안에 활동하는 분들이면 좋고...시아머님도 사실은 시아주버님 혼자서 케어하고 계시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도 자주 가서 뵙고 반찬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잘 못하니깐 남편도 그렇고 엄마아빠도...지금은 아버지 혼자서 일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있음 또 엄마처럼 케어가 필요하실 것이고...우리집에만 해도 세분인데, 이런 분들 주변에 되게 많이 있는 것 아는데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공동의 돌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해보면 어때? 이런 얘기도 나누거든요. 일본 같은데도 조금 더 젊은 노인이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본다고. 왜냐하면 그쯤되야 돌봄이 뭔지도 알고 처지도 역지사지가 되니까 그럼 나중에 나보다 젊은 노인이 나를 돌봐줄거고 서로 서로 믿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생협들에서 운영하는 NPO같은데서. 그런 거 우리도 좀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를 보니까 나중에 자식들도 저처럼 부담감을 느끼면서 병행을 할려다 보니까 자기생활이 없다 이런 것들이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거 막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생명연장하는 것도 하지말라 다 써놓을거고 그러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모님 부담되잖아요 자식들은”(이선희/ 기혼, 50세, 돌봄기간 4년)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거의 20배 임금을 받던 한 시간의 노동과 20분의 일의 (임금을 받는) 돌봄노동이 가치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나? ...삶을 전환시켜

준 거죠. 제가 그 전에 사실은 그런 맥락의 삶이 과연 맞는가, 나의 가치는 연봉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매해 연봉협상을 할 때 아, 나의 가치구나, 그런 잣대로 살아왔던 내가 이게 맞나? 물음표가 생기는 시점에 엄마 일로 정말 실상을 접한 거죠”(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돌봄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게 사실은 즐겁진 않아요. 너무 암울하지. 나의 미래가 저렇게 된다는 게. 그렇지만 어떡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꾸 자기 암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모시면서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우리 세대 밑의 아이들한테 말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나처럼 해라’가 아니라 어쨌거나 가족은 우리가 함께 품고 돌봐줘야 될 그런 거라는 걸 그냥 그렇게 그냥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제 딸이 나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딸아이는 할머니를 다행히 좋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할머니랑 함께 살았었고, 결혼해서 이제 나가있는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박선영/ 기혼, 63세, 돌봄기간 9년)

“제가 반경 200m 내를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을 한 3년 째 하니까 사이버 네트워크를 끊게 되더라고요.....저의 주된 관심사는 그 당시에는 죽음이었어요. 죽어가는 과정.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하잖아요, 근데 저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너무 터부시하고 죽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죽는 건 정말 지리한 과정이거든요....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잘 어떤 식으로 죽는가를 우리가 사회가 그걸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사회라면 이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이 삶에서도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연결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의를 베푸는 거를 그게 선의로 안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 사람은 이렇게 다 써도 되는구나, 일종의 약간 좀 가정부? 근데 이제 저는 저를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자녀분들과 이 분들은 저의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주시지만 가끔 오시는 친척 분들 아니면 타 가족 분들 인식은...”(이은영/ 비혼, 48세, 돌봄기간 18년)

“노년이 되면서 친구가 가족보다 더 필요하고요 이게 사회적 관계성이 되게 중요해요. 인간은 공동체적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노년에 대한 이해만 잘 있다면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가족, 특히 부모하고 관계를 맺는게 굉장히 든든하다고 그럴까”

(김은숙/ 비혼, 51세, 돌봄기간 10년)

5. 함께 돌보는 돌봄민주주의를 향하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권력자원을 가진 중하층 여성에게, 그리고 가족 내 가장 취약한 권력자원을 가진 비혼 여성에게 돌봄제공 부담이 낙착되는 것은 놀랍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단 돌봄을 떠맡기고 나서는 돌봄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돌봄을 권력자원 취약자에게 맡기는 순간 골치아픈 돌봄‘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돌봄을 둘러싼 모든 책임, 육체적 부담, 시간적 부담, 경제적 부담, 정서적 부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독박 씌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돌봄의 올라미에 걸려든 한 사람에게 돌봄부담과 책임을 몽땅 전가하는 것이다.

돌봄부담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나아가 돌봄부담의 양극화는 예견된 일이다. 사회정의가 애초에 배제하고 있던 보이지 않던 그림자 세계인 공식 및 비공식 돌봄 영역을 가시적 영역으로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온전히 보이게 되는 사회 부정의(不正義)에 직면하여, 돌봄이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정의기준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정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돌봄이 생산노동만큼이나 우리 삶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공식, 비공식 돌봄 구분을 해체하고 돌봄을 전면적으로 가시적 영역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관계적 존재라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Tronto(2013)의 주장과 같이 돌봄에 대해 모두 함께 책임지는 ‘함께 돌봄’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돌봄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돌봄을 정치적 논의 중심에 올려놓아야 한다. 돌봄책임의 민주적인 배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그 협의과정에 돌봄당사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주변화된 돌봄(marginalized care)에서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석재은, 2018). 시민으로서 돌봄의 보편적 권리와 돌봄의 보편적 책임에 대해 얘기하자.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이다. 돌봄에 대해 모두 함께 책임지는 ‘함께 돌봄’을 실천하자.

발제 2

‘딸’을 넘어 시민을 상상하다⁵⁾

최원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5) 본 발제문은 민우회 성평등복지·회원팀 최원진, 이운소, 이지원, 김진희, 김민문정 활동가가 함께 논의한 내용을 최원진이 대표 발제함.

1. 들어가며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은 지난 5년간 보육, 주거, 노년, 1인가구, 돌봄을 키워드로 여성의 안전이나 빈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 최저주거권이 아닌 적정주거권, 보조양육자인 할머니가 없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결혼 외에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등 기존 (혈연/혼인에 기반 한) 가족 중심의 복지 제도를 '개인' 기준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민우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2017년 성차별보고서⁶⁾에 따르면 성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공간은 '가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딸로서의 역할 강요'가 도드라졌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10~30대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정서적 케어(친구 같은 딸, 애교, 부모마음 헤아리기 등)를,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부모 돌봄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었다. 차별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국사회는 여성을 '시민'이 아닌 '딸'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여성들이 시민이 아닌 '딸'로서 원가족에 대한 돌봄노동을 자연스럽게 요구받는 현실은 새로운 시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대비되는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공적 돌봄의 영역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노인돌봄의 사회화·공공화를 목표로 2007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전체 종사자 중 95%가 여성인 장기요양보호사는 단시간 시급제로 설계되어 월평균 소득이 64만원⁷⁾에 불과하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등급별 차등 시간 적용(3-4등급 노인들의 방문서비스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함)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진 반면, 서비스의 질은 후퇴하고 있다.

6) 『한국여성민우회 30주년 기념 토론회_2017 성차별보고서』(2017) 2017년 6월~7월간 진행된 본 조사는 1,257명이 응답했고 4,788건의 차별 사례가 수집되었다.

7) 『나이들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대토론회』, 2017,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 공동대책위, 자료집 18p. 현재 요양보호사 30만명 중에 86%가 재가요양보호사이며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65만원, 나머지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월평균 임금 115만원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기준, 1인가구가 27%를 넘어서면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삶의 형태가 되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연일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등⁸⁾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1인 가구/비혼/고령인구의 증가는 규범적 가족이 더 이상 보살핌 관계망으로서 역할하기 어렵다⁹⁾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희생으로 지탱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우회는 부모 돌봄을 경험한 여성들의 목소리로 돌봄 불평등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돌봄의 공공화·사회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했다. 본 발제문을 통해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과 기존제도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돌봄 현실과 어긋나 있는지 밝히고, 관점의 변화와 제도적 대안을 요구하고자 한다.

8) 한국경제, “한국인 평균 초혼 연령, 결혼을 최저?”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artid=A201505280032>(2015. 5. 28)

9)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2012),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 유정미

II. 조사 대상 및 방법 개요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20명(비/이혼 15명, 기혼 5명)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1~2시간가량 1대 1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인터뷰이는 온라인(SNS) 및 지역 민우회,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모집했다.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1명, 40대 5명, 50대 10명, 60대 3명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인터뷰이 선정 시 주요하게 고려했던 조건은 결혼여부로서, 결혼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이 원가족 돌봄으로 다시 귀결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자 비혼여성의 비중을 높였다. 인터뷰이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뷰이 기본정보

*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함.

	이름	나이	돌봄 기간	결혼 유무	주요 내용
1	강수민	26세	6년	비혼	어머니가 급성백혈병 투병 후 자궁암이 발병하여 2년 돌봄 전담함. 돌봄과 학업, 아르바이트 3중고에 시달림. 지금도 부모 중 누군가 다시 아프면 돌봄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해외에 취업할 계획임.
2	김지숙	65세	5년	비혼	직장 퇴직 후 돌봄을 전담하게 됨. 어렸을 때부터 딸 노릇함. 어머니 치매 판정 전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했음. 현재 가족요양 중이고, 현장에서도 실제 딸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함. 지속가능한 요양제도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이은영	48세	18년	비혼	어머니 뇌종양 판정 후 수술, 입퇴원, 합병증 투병 반복함. 초기에는 일과 병행했고, 돌아가시기 전 2년은 돌봄에만 집중함. 퇴원 이후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돌봄 역할을 수행하면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 전문적인 돌봄노동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전은희	38세	3년	비혼	이십대 초반, 당시 40대 중반인 어머니가 뇌출혈로 투병함. 휴학 하고 1년 병간호함. 퇴원 후 데이케어 센터에서 3년간 지원받음. 대학졸업 후 전담해서 돌보다가, 어머니 증상이 완화되면서, 현재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정기적으로 방문함.

5	박선영	63세	9년	기혼	어머니가 노령으로 돌보게 됨. 데이케어 센터 이용 중이고 만족도 높음. 주변에서 주로 듣는 얘기가 '남편이 훌륭하다' 예전 같으면 강하게 주장할 일도 어머니를 모신 뒤로 주저하게 됨. 현재 손주도 돌보고 있음.
6	최주영	50세	14년	비혼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가 치매로 진단받기 전에는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였음. 1년 전 치매로 5등급 판정 후 재가요양 받고 있음. 고정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사회복지사,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전일제 일 구하고 있음.
7	이선희	50세	4년	기혼	어머니가 암으로 수술 후 휴우증으로 파킨슨 투병 중. 한 달에 반 정도 데이케어센터에 다님. 기혼으로 두세 대 돌봄 및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 개인 시간 전혀 없음. 일, 가사노동, 돌봄 어느 쪽도 만족이 안 되는 상황임.
8	문희주	53세	3년	비혼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지만,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해왔음. 어머니가 몸이 약해지면서 본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함. 생활비 외에 돌봄 비용은 남자 형제들이 부담하고 있어서 돌봄과 관련된 의견을 내야할 때 담당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있음.
9	정주현	61세	15년	기혼	어머니가 당뇨 진단 받고, 현재 만성신부전 신장질환 말기판정 받음. 일주일에 한번 방문을 하고 매일 통화하고 있음. 본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엄마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힘들었음.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요양보호사를 빠르게 연계 받았음. 짧은 돌봄시간이 아쉽고 요양보호사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0	배혜영	49세	15년	비혼	어머니가 뇌출혈 발병 후 편마비 증상 있음. 혼자 있기 어려운 상황. 본인이 일하는 8시간 반 동안 요양보호사가 돌봐주고 퇴근 후 돌봄 전담함.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높지만, 돌봄이 당연시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요양병원은 돌봄보다는 '수용'에 가깝다고 느낌.
11	김은숙	51세	10년	비혼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 수술 이후 인지능력 저하가 함께 왔음. 오랜 시간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 함. 사회복지사와 장기요양보호사자격증 공부를 통해 어머니의 증상을 이해했음. 노인 퇴행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2	손은주	53세	3년	기혼	어머니가 노환으로 인한 고관절로 3년 투병함. 섬망 증상이 있어서 치매 4등급 판정받음. 데이케어센터 6개월 정도 이용했고 지금은 몸이 악화되어 입원한 상황. 돌봄노동에 대한 고민이나 힘들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음. 남편이 부양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력에 대한 고민이 있음.

13	박혜선	52세	3년	기혼	아버지가 심혈관 질환으로 투병함. 치매 초기 판정받았음. 주로 간병은 어머니가 하고 병원 통원이나 입퇴원시 보호자 역할 함. 장기요양사 자격증 취득했고, 앞으로 부모님 건강이 악화되면 그룹홈을 직접 운영할 계획도 있음.
14	지숙희	44세	2년	비혼	폐암한 아버지 돌봄. 다른 기혼 자매형제들에 비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돌보게 되었음. 종합병원이 보호자가 꼭 필요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 있음. 법적 가족이 아니라도 서로 돌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5	장영숙	56세	17년	이혼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고, 현재 재가요양 받고 있음. 배우자와는 오래 전 이혼했고 고정적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길게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고 웰다잉 교육,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6	진명주	48세	5년	비혼	외국에서 일하면서 오래 거주하다가, 어머니 돌봄을 위해 귀국함. 의식불명상태의 어머니를 2년 가까이 병원에서 간병하고, 이후 재가요양을 거쳐 현재는 데이케어 이용 중. 퇴원 후 직장을 다녔지만 돌봄 때문에 지속하지 못했고, 돌봄과 병행 가능한 직종 알아보고 있음.
17	심희영	54세	10년	비혼	다른 형제자매들은 결혼으로 자연스럽게 독립했고, 부모님의 가계를 책임지다가 어머니 돌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됨. 오래 근속한 직장에서 부모님 돌봄을 배려해주지 않아 퇴직 한 경험있음. 노인돌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장기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게 됨.
18	현지은	58세	4년	비혼	외국에서 일하다가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아프면서 귀국함. 현재는 치매 중증. 얼마 전에 (본인)수급자 신청했음. 24시간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 생활비와 돌봄 비용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하고 있어서, 재가요양 기본 3시간만 이용 중
19	이명희	50세	5년	비혼	치매 발병한 어머니 돌봄. 돌아가신 아버지 연금이 있어, 입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직장생활과 돌봄을 병행함. 1인이 돌봄을 전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있음.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돌봄을 분배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20	김명주	45세	5년	비혼	어머니가 지병이 있어 계속 아팠고 근래 크게 악화되어,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돌봄을 전담함. 1인가구를 오랫동안 유지했고, 앞으로도 유지할 생각임. 부모 돌봄을 하더라도 거리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Ⅲ. 기/비혼 여성의 부모돌봄기

1. 딸 돌봄의 시대

민우회가 만난 20명의 여성들에게 부모 돌봄의 계기를 물었을 때 ‘강제적’이었다고 답한 이는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쩌다보니’, ‘자발적 선택’, ‘내가 여건(비혼)이 되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돌봄)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며느리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맞)다고 판단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의 맥락을 살펴보면, 능동적 수용에 가까웠다. 즉 여성들에게 부모 돌봄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떨어진 과제가 아닌, 그간 원가족 안에서 요구받거나 수행해 왔던 역할의 연장선이었던 것이다. 가족 관계 안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아들(남성)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자의 역할에서 일단 제외 된다는 것이다. 즉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공식’이 공고한 현실에서, 높은 확률로 부모 돌봄의 역할은 ‘딸’의 몫이 된다. 특히 돌보아야 할 가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혼 ‘딸’일수록 1순위다.

배혜영 (비혼, 49세, 돌봄기간 15년)

저도 그게 미스터리예요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그게 오랫동안 뿌리 깊게 저한테 내재된 그런 집안 일에는 돌봄노동에 첫째가, 장녀가 해야한다 뭔가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게 저한테 내재되 있었던 것 같고.

최주영 (비혼, 50세, 돌봄기간 14년)

(돌봄을 하게 된 계기는) 오빠들은 다 일하고 있었고 가족이 있고 저는 저 혼자였으니까 결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발적이었어요.

심희영(비혼, 54세, 돌봄기간 10년)

직장생활을 제가 이제 98년 97년 정도부터 했었는데, 2000년도부터 아버지도 누워계시니까 실제로 생활을 책임진 거는...그때부터 거의 다 제가 했죠. (중략) 보험도 없으셨고 노후 준비도 없으시고 자식이 보험이지 자식이. 자식 다섯 중에 보험이 저였어요. 그냥 그런 걸 원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상황 상 제가 될 수 밖에 없었는데.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아빠와 오빠는 당연스럽게 제외 되니까 저랑 언니밖에는...(돌볼 사람이 없었죠)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돌보고, 이후엔 제가 돌보고.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결혼해서 다 처자식이 있고 한데 형편상 경제적으로나 뭐나 제가 제일.... 둘째인데 자랄 때부터 부모님이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맏딸 역할을 다 하다시피 했어요.

진명주 (48세, 비혼, 돌봄기간 5년)

(부모 돌봄 전에는) 나름대로 자리는 잡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글썽요. 그걸 다 버리고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꼭 100% 그런 건 아니에요.(중략) 다들 안 된다고 하니까. 다들 요양원으로 그냥 의식이 없으신 채 모셔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제가 너무 참혹하니까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돌봄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가족들이 내가 하는 돌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원가족 내에서 돌봄을 나누지 않는 남성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도 연결된다. 오빠나 남동생에 대한 부모들의 상반된 태도는 가족이 성차별을 체감하는 대표적인 공간임을 보여준다.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물론 제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긴 한데 뭔가 제일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건 오빠한테 뭔가 화살이 가지 않아요.(중략) 돌봄 노동이 제일 힘든 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김명주 (4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오빠한테 섭섭한 게 있죠. 뭐냐 하면 내가 5했기 때문에 너도 5해라, 이걸 아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그 5가 당연해지는 거 있잖아요.

정주현 (61세, 기혼, 돌봄기간 15년)

나쁘게 말하면 말로 다 떼우죠, 니가 고맙다, 항상 고맙다,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 항상 그걸로 끝이에요.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제가 한 돌봄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때. (중략)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처럼 상호적이거나 되갚을 의무가 없고 좀 일방적인 돌봄을 요구하고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든 되갚을 계약적 의무가 없는.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저한테 일을 그만 두라고 엄청나게 압박을.(중략) 아빠가 돈을 버실테니 니가 나를 간병해라.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안들었죠.(중략) 그러니까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 안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길 하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결혼제도 안에서의 ‘며느리 역할’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의식이다. 기/비혼 여성 모두 본인의 독박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함을 토로하면서도, 과거처럼 ‘며느리’가 부모 돌봄을 맡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못할 짓’, ‘부당하다’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결혼제도 안에서 ‘며느리’가 가진 지위, 역할에 대한 여성들의 변화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들에게 부모 돌봄은 ‘며느리에게 전가 되는 것’의 부정의함에 대한 개인적 실천이다. 돌봄 전담자가 며느리에서 딸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돌봄전담자라는 점에서 성역할이 강력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

치매 등급 받은 게 2012년이라고 했잖아요. 사셔야 1~2년 살다 가시겠지, 했는데 치매로는 돌아가시질 않겠더라고요. 정신줄을 놓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내 부모데. 내 미래가 저렇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엄만데. 시어머니라면 아마 못 할 것 같아.

박선영 (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

저도 며느리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아버님도 모셔보고 했지만 그냥 저는 뭐 제가 그러려니 하고 모셨지만 피도 안 나는 며느리한테 어머니를 맡긴다는 건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서 그래도 여성이니까 내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실 거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도 마침 거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중략) 저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너보고 맡아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오빠들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결정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한 것에 대해선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올케들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심희영 (54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

며느리는 무슨 죄냐고요 내 부모도 아니고, 나야 내 부모니까 감수하고 형제들 힘들게 사니까 아휴 그래 말자, 그거가지고 씹박질 해봐야 저 세상가신 부모님이 좋아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냥 내 몸 하나 희생하면 되지. 근데 희생으로 끝나면 계속 이게 한으로 사무칠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꿨냐하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라는 거.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해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입장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깐 마음 편하더라고요.

2. 문제는 ‘독박이다

인터뷰이들 중 스스로를 독립적이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돌봄 이전에는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거나 같은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개별적인 삶을 살아왔던 여성일수록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문희주 (53세, 비혼, 돌봄기간 3년)

네 제가 다 하죠, 사실은 그 중심축이 다 나한테 넘어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거를 많이 넘겼어요. 처음에 엄마가 쓰러졌을 때가 2015년 11월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고 전화 안받으니까 문자가 오고 엄마랑 같이 계신 분께서 전화가 온거죠. (중략) 여전히 엄마가 장이 나빠져서 쓰러졌을 때는 늘 1번이 저인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중략) 우리집은 완전 독립적이고 따로따로 사는데 그냥 혼자인 두 사람이 같이 사는거지, 라이프 사이클도 다르고 먹는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공동 생활하는건데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나한테 저렇게 기대기 시작하면 나는 감당이 안되는거죠 나중에 정말 엄마가 나빠졌을 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은희 (38세, 비혼, 돌봄기간 3년)

아프시고 난 후에 퇴행이 와서 처음에는 6~7살 아이 수준이었어요. 병원에서 1년 간 병하고, 데이케어 센터를 3년 다니면서, 돌봤는데, 20대가 다 지났어요. 이렇게 계속 살수는 없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일상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 근처에 따로 집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못 받아들이고 막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랬는데...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립이 어렵다고 생각해서...근처 살면서 일주일에 서너번 가서 요청하는 거 도와드리다가 지금은 버스타고 20분 거리에 살아요.

특히 중증질환이나 치매 증상 있는 부모의 경우 24시간을 책임지는 것에서 오는 힘듦을 토로했다. 돌봄은 감정노동을 포함한 노동집약적 행위다. 인터뷰이들 중 몇몇은 독박 돌봄으로 인한 ‘부모 살해’를 이해한다고 고백했다. 육아처럼 가족 내 한 사람이 돌봄 노동을 전담될 때, 돌봄자와 돌봄 받는 이 모두 고립된다.

정주현 (61세, 기혼, 돌봄기간 15년)

매일 전화를 드려야 되요. 기다리시니까. 그렇게 해서 짧으면 30분? 길면 40~50분 얘기를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있어요.(중략) 제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어서, 때로는 조금...자식을 조금 배려해줬으면...뭐 매일 할 거 있나라던가 뭐 이삼일에 한번해도 괜찮지. 이러는데 너무 기다리시고. 어쩌다가 밖에 나가있거나 정신을 다르게 약간 잠깐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전화 와서 막 노여워하시고...시간이 다 돼갔는데 왜 전화를 안 하느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고, 매일 해야 하는 숙제 같죠.

이선희 (50세, 기혼, 돌봄기간 4년)

버겁다...내가 당당히 해내고, 그래 고령사회 있을 수 있는 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한다고 하는데도 가끔은 아 진짜 버겁네. 바깥에서도 일이 굉장히 힘든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도 여지없이 뭔가 해야하는 일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잠시 도망가고 싶다 하고 버거울 때가 순간순간 생기더라고요.

개인시간이 없어요. 전혀 쓸 수가 없는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려고 하면 마음이 벌써 힘들어져도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엄마한테 가서 뭘 해야지 그게 딱 걸리니까 그 이후에는 개인시간이 1도 없어요 정말.

진명주 (48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엄마랑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도 많아요. '이러다가 어느 날 뉴스에 날 수가 있어, 엄마랑 나랑.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100% 이해되는 게 밖에 나가고 차라리 병원에선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오고 사회관계가 안 되잖아요.

국가는 가족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돌봄을 전가하고 개인화 할 때,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은 돌봄의 몫이 본인에게 넘어올까 두려워 돌봄 전담자가 힘들음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무시하거나 침묵하게 된다.

전은희 (비혼, 38세, 돌봄기간 3년)

정말 사실 저는 아프면서 인간에 대한 환멸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엄마의 형제들에 대해서. 자기네한테 피해 갈까봐. 경제적으로나 짐을 지게 될까봐 '그건 다 오로지 너의 몫이야.'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중략) 엄마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끝나지 않을 거라는 고통이 심했죠. '평생 이렇게 산다.' 그래서 사실 간병인이 먼저 병들어요.

진명주 (48세, 비혼, 돌봄기간 5년)

‘네가 고생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이럴 때 진짜 화나죠. (중략) 안 그런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90%가 그래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짐이 다 한 사람한테 독박 돌봄이고.

손은주 (53세, 기혼, 돌봄기간 3년)

제일 힘든 건 누구랑 나눌 수 없는데 힘들구요. 제가 그런 걸 힘들다고 하면, 그걸 결정할 때,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옮겨야 하는지, 하다못해 하여튼 뭐 하나라도 결정할 때 힘든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니까

심희영 (54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주말에 나도 좀 목욕도 좀 하고, 휴식 중이지만 지금 하는 일의 특성 상 직접 내 고객을 만나야 되요. 그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주말에라도 가야하는데 (형제자매들에게)요청하면 아무도 안와요. 형제들 모여서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을 좀 모아달라, 그런데 의견은 내가 결정해라, 왜냐면 엄마의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맡겨놓으니까 누구도 중간에 어떤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결정조차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아무리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적으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나가서 운동하고 하다보면 좀 잊어버리고 생활하고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엄마 때문에 어디를 움직이지질 못 해요. 어디를 뭐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건 생각지도 못 하고 어딜 가도 항상 머리에 이게 있고 준비가 다 돼있어야 되잖아요.

3. 선별복지의 문제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라는 목표아래 2007년 첫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여성들의 돌봄 현실과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이 등급판정이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신체장애에 비해 인지장애(노인성 치매)는 기본적으로 등급이 낮고, 신체장애가 있어도 투병기간이 길지 않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급을 낮게 부여한다. 이는 제도 이용 가능한 문턱을 높이고, 실제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인터뷰이들은 말한다.

이선희 (50세, 기혼, 돌봄기간 4년)

원래는 등급 외예요. 없었다가 최근에 생긴 게 인지등급이라는 것이 있대요. 치매 초기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등급판정도 이해가 안 되는게, 엄마는 아직 치매보다는 신체활동이 어려운데 왜 이런 등급을 받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재신청을 해놨어요

박선영 (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세 번, 네 번째에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어렵게 받았죠. 저희 어머니가 사람을 만나면 총기 있어 보이시거든요. 깔끔하시니까 그렇게 크게 도움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등급이 안 나왔던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간청을 했어요. 친구를 만 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도와 달라, 했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명희 (50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우리 엄마는 당시에 수술은 했지만 몸은 움직일 수가 있었고 잘 움직였고 그런데 굉장히, 밤이 되면 서성거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피해망상 같은 게 굉장히 심해 있을 때인데 거기 당하는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 물론 아시겠지만. 근데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줘요. 근데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섬망 증상이 심한)우리엄마가 3등급 밖에 못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총 시간 수가 제한되었어요.

이러한 선별복지방식은 이용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힘들을 ‘어쩔’하게 만든다. 아픔을 증명해야만 더 높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의 등급제는 노인돌봄을 보편 복지로서 사고하지 못하게 한다.

이은영 (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그때 심사가 나와 봐야 지금의 상황은 기준에 따르면 1등급의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의 심사로는 4등급밖에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걸 염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희도 감사한 일이다. 상담을 받고 이것저것을 알아봤을 때의 제가 받은 느낌은 엄마의 상황이 굉장히 처절하고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을 계속 피력해야 된다는 사실이.

특히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방문요양서비스 등급별 차등 시간 적용제(3-4등급 노인들의 방문서비스 지원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에 대해 부모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인터뷰이들 모두 입을 모아 비판했다. 혼자 둘 수 없는 경증~중증 치매, 노인성 질환(심혈관, 고관절)을 앓고 있는 부

모의 경우, 기존 4시간 지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대가 아닌 축소 시행은 장기요양제도가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가족을 보조해주는 의미로 시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문희주 (53세, 비혼, 돌봄기간 3년)

지금 요양보호사가 와도 기준이 낮아져가지고 올해부터 3시간 밖에 안해주잖아요. 근데 말이 그렇지 치매 3급이면 혼자 외출도 못하시고 혼자두면 안되는데 하루 3시간 이라구요. 그나마 전에는 4시간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돌보는 사람의 인생이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시간까지 가능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버틸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거죠. 그 환경이 안 되면은 힘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을까요?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시간이 줄었거든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줄이면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배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등급이든 뭐든 간에 혼자서 일상, 의식주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그래도 여섯시간 정도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지.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세 시간으로는 보호자가 어디 외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양선생님 오셨다고 바로 나갈 순 없는 거고 오셨으면 어영부영 좀 이렇게 하다가 나가고 그리고 요양선생님 가시기 전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야말로 주변 마트를 가거나 오산시 주변에서 불일 볼 때 부랴부랴 보고 들어가야 되지, 그거 외에는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시간은 너무 짧아요.

4. 경제력에 따른 돌봄의 격차

장기요양제도의 이용자 선별 및 지원시간 축소 정책으로 인한 공백은 결국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된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가지게 된 문제 의식은, 부모 혹은 자녀의 경제력에 따라 돌봄 환경이 좌우되는 현실이었다. 인터뷰이들 간의 조건에 따른 경험적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이기도 했다.

이은영 (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우리 오빠가 운이 좋게도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비용 지원이 됐어요. 일 년에 한 200인가 300한도 저는. 그 당시 오빠는 한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이 됐습니다.

요양병원을 8~9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가장 그 당시에 잘 되어있다는 경기권의 분당 쪽으로. 그 곳이 시설이 잘 돼있고 요양병원인 곳을 갔는데 월비용이 350 그 당시에.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추가로 내고 해요. 한 시간에 만 원씩 더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도 부담이 되고 우리야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걸(3시간 이상 돌봄) 못 하죠. 지금은 수가가 올라가서 17만 원씩 내거든요. 그거 내기도 버거운 거죠, 사실. 거기다가 하루에 1~2만 원씩 더 낸다 하면 한 달만 해도 40~50만 원인데 부담돼서 못 하죠.

박선영 (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경제적으로는 다행히 엄마도 노령연금이 나오고 저희도 연금을 받고 이러니까 서로 그런 갈등은 없어요. (중략) 지금 데이케어센터는 노령연금과 엄마가 일 년에 한 번씩 목돈으로 들어오는 그걸로 제가 대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큰 욕심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영숙 (56세, 이혼, 돌봄기간 17년)

(장기요양을 3시간 이상 받을) 그럴 여유는 없어요. 지금 장기요양도 겨우 내는 상태고 지금 돈벌이가 없거든요. (중략) 저 같이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는 혼자서 다 감당하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보험이 중증이 얼마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다 개인부담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물론 연명 치료할 생각은 없지만 정말 불요불급하게 중환자실에 들어갈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간병인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감기 이런 게 보험이 안 되더라도 보험 재정을 구조화를 다시 하든지 그럴 필요가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 입소 당시) 60만 원 냈어요. 100만 원짜리도 있었고 돈이 많으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으나 빈곤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체제인 것 같아요. 두 달인가 있다가 나왔어요.

부모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터뷰이들 중 비용 문제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답한 경우, 보호자인 자녀가 일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부모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잠가놓고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시니까. 그럼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가정요양을 제가 하고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나와서 일을 하려면 문 잠가놓고 밖에서 못 나오게 안에서 열쇠를 따로 맞췄어요. (중략) 열쇠 잠가놓고 “엄마, 나 일하고 올게.” “응. 갔다 와.” 그리고 카세트를 틀어놔요. 노래. 그럼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지금 내가 방문하고 있는 집도 딸이 모시고 있어요. 딸도 아침 9시에 나가면 저녁에 9시에 들어와요. 어머니 혼자 있어요. 우리가 세 시간 가주면 올 때는 내가 너무 안 쓰러워. 혼자 놔두고 오려면. 그럼 내가 점심 차려 드리고 저녁까지 준비해놓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럼 하루 종일 TV만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박선영 (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요양사분들이) 5등급이면 일주일에 세 시간 세 번 정도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더 이용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저 금액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 너 시간 나머지는 엄마가 혼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 시간도 자유롭게 못 하고 끼니도 제가 챙겨드려야 되고.

이마저도 부모가 **중증 질환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선택지는 더욱 좁아진다. 시설(요양원, 요양병원)을 선택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없고 (비혼),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을 주로 수행해온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전담하게 된다. 돌봄 전담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입지는 줄어들고, 돌봄과 관련된 의견을 가족 내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를 만든다.

문희주 (53세, 비혼, 돌봄기간 3년)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내잖아요 생활비만 내고 이런 걸 할 때 안내고 열외로 빠져있으니까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뭔가를 할 때 당당하지 않은 게 있어.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돌봄은 제가 전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비용을 내다보니까, 눈치가 보이죠. 장기요양도 3시간 이상 받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해요. 병원비용도 그렇고. 좀 주눅드는 게 있어요. 엄마가 돈이 이만큼 들었다. 이걸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도와줘, 도 아닌데 엄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건데도 돈 얘기할 때는 늘 미안해요.

실제로 ‘노년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적지 않은 인터뷰이들이 ‘경제력’, ‘돈’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돌봄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만 이야기 되는 노년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노인들의 삶을 삭제하거나 과장한다. 보편적 돌봄 복지 제도 구축과 함께, 돌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이명희 (50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요양보험제도 갖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연금을 우리 엄마가 80퍼센트를 받았잖아요 국민연금을. 이게 없었으면 정말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 200만원, 되게 많은 돈이에요, 2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실 한분을 고용을 했어요 집에 재택으로. 상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어요.

5. 일과 돌봄, 그 사이에서

돌봄 전 후, 가장 변화가 컸던 것이 일, 진로, 직업이었다.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돌봄으로 인해 기존의 일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 돌봄 가능여부가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동했다. 노동 시간이 길고, 가족 돌봄을 존중하지 않는 대부분의 직장 문화에서 인터뷰이들은 개인 시간을 쪼개 두배 세배의 일을 부담하거나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롭고 돌봄과 병행이 가능한 직종을 찾아 이동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은영 (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지금 내가 뭔가를 엄마를 케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뭔가를 막 벌려서 하는데 그 돈을 온전히 엄마한테 간다기보다 뭔가를 통해서 또 나가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피곤한 채로 저녁에 와서 엄마를 잠깐 주무시기 전에 잠깐 맑은 정신이 있으면 30분 정도 보고 한두 시간 보고 자고 또 아침에 나가는 데 그 다음에 또 나는 나대로 피곤하고 엄마를 볼 시간도 많지는 않고 이게 뭐가. 뭐하는 짓이지? 라는 순간이 문득 들면서 그냥 내가 하자. 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땀어요.

전은희 (비혼, 38세, 돌봄기간 3년)

(직업을 구할때) 돈 보다는 돌보는 시간, 거리랑 혹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어서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본다든가 뭐가 그런 도움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 그거하고 맞바꾼 거죠.

심희영 (54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는) 돌봄문제도 있었어요. 그 직장을 다닐 때는 관리자였는데 관리자가 자리를 마음대로 못 비워요. 그래서 연차를 쓰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눈치 보이던 직장이었어요. 쓸려면 쓸 수도 있었겠지만 막판에는 너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가야하는 거니까 연차내고 갔다 오면 뒷말이 많았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상사가 자리비우는게 싫은 거예요. 어머님 편찮으신 건 아는데 안 보내줄 수는 없고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연차내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갔다하고 탄짓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자리를 자주 비워? 내가 잠깐 낮에 자리비우는 걸 만회하려고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나와서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커버하려고 하는 건 생각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회의도 많이 들었고.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비슷한 시기에 다 등급갱신을 하다보니까 환자들이 되게 많이 밀려있는데다가 그리고 이제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려면 보통 한시간은 대기를 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반나절 이상을 다 잡아먹으니까 제가 다른 업무를 보기가 너무 힘든거예요.(중략)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삼일을 정말, 삼일을 가서. 업무를 봐야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눈치 엄청 보였죠.

진명주 (48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도중에 자꾸 엄마 병원에 모셔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좀 안 되는 거죠. 너무 갑자기 이런 저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눈치 덜 보는 직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일, 돌봄 둘 중 어느 것도 잘 해내지 못하다는 자괴감을 갖게 된다. 돌봄 가능 여부로 직장을 구하거나 그에 맞춰 진로를 결정했을 때, 돌봄이 끝난 후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였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등 새로운 고민 속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이선희 (50세, 기혼, 돌봄기간 4년)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한거죠. 엄마한테 집중할 수 없고 일도 상대적으로 집중 안 되고 집안 식구들한테도 내 가족들한테도 어느 것도 흡족하게 내 마음에 닿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게 되게 진짜 예술인 것 같더라

고요. (중략) 고령사회에서 노인돌봄의 문제를 개개인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말이 되나 이걸 좀 국가나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저녁시간에나 주말 같은 때 그때는 제 노동을 위해서 재생산을 해야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죠.(중략) 제가 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삶을 유지하게 하는데 필요한 쉬는시간 이게 확보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딱 한 시간이라도 딱 셔터를 달고서 쉬고 이래야 일을 하잖아요 이게 안 되고 계속 이제 긴장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중략) 집이 쉽이 아니라 집이 또 다른 일터예요.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

(가족이)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커리어라든가 뭔가를 진로를 결정하려고 계획했던 게 다 망가지요. (1순위는) 내가 할 일과 엄마 돌봄. 나의 엔터테인먼트는 3순위, 4순위로 밀린단 말예요.

근데 저는 (돌봄이 끝났지만)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뭔가를 스스로를 위해서 뭘 하는 걸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조차 안 먹게 되거든요.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고.

인터뷰이 중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부모 돌봄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장기요양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부모 돌봄과 일을 병행하기 위한 방편이자, 나이든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중 몇몇은 현재 돌봄 노동자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제도의 이용자 가족이면서 동시에 돌봄 노동자인 두 가지 정체성은, 장기요양제도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최주영 (50세, 비혼, 돌봄기간 14년)

어쨌든 좀 더 나이 들면 진짜 전적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돌봐야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족도 (돌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따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안 하려고 해요.(중략) 돌봄을 하는 당사자한테 감정노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쉽지 않아. (중략) 가족 간에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거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겠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은영 (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국가가 개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건 못 믿겠으니 중간 단체를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민간기관이 하는 일은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브로커가 거의 25% 이상의 그걸 상시적으로 떼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제가 이쪽(민간기관)한테 내는 돈은 18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야 속내를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장기요양사)이 받는 돈이 1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략)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럼 나머지 65만 원은 어디 간 건가, 싶어가지고 이걸 도대체 뭐 가.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치매등급을 받은 환자가 있으면 다 가정요양을 할 수가 있어요. 등급이 있으면. 근데 가정요양이 한 달에 20시간 밖에 안 됐어요. 한 달에 20시간이면 30만 원? 그리고 본인부담으로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15%를 우리가 내야 돼요.

그럼 지자체에 여기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도 있고 한쪽에다 해놓고 복지사업 월급도 거기서(국가보조금) 다 나가요. 다 지원을 해준단 말예요, 공단에서. 그럼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앉혀놓고 이런 데 사무실 같은 거 하나 앉혀놓고 중간역할만 해주면 요양보호사는 힘든 일 하면서도 대가를 다 받을 수 있고 가정요양 같은 것도 그 사람이 먹을 거 우리가 가져오면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건데 그걸 지금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요양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제가 65세인데 우리도 한 15년 있으면 80이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요양선생님을 써야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지나고 우리는 그대로 좀 인내한다든가 그런 걸 좀 참고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거(요양보호사) 안 하죠. 돈도 안 되고 돈이 되면 들어와요. 그런데 돈도 안 되고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협회에서 뛰어다니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케어할 때쯤은 젊은 사람들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센터들도 요양선생 구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 열 명이면 세 명뿐이 일을 안 해요, 자격증 따놓고. 왜 그러겠어요? 돈도 안 되고 힘드니까.

6. 돌봄을 통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맺음'이 가능한 조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돌봄은 신체적 돌봄 뿐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이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이 바로 '관계맺음의 중요성'이었다. 신체적 케어의 도움도 절실하지만, 돌봄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부모가 한 명의 요양사와 최대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 즉 정서적 케어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신체적인 돌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이라던지 사회적 관계망들을 되게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나가고 이런 게 줄어드니까 그런 관계들을 어찌됐건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저는 목욕하고 바깥 산책, 외출 나가서 한 번 바람 쐬는데 되도록이면 휠체어를 엄마가 끌고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 해 달라. 다리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주로 엄마랑 노는 거, 대화하면서 화투치고 이리저리 부탁하고. 웬만하면 엄마하고 지내달라고 TV 안 보게. 나랑 있을 때는 계속 TV 보시거든요. 제가 엄마랑 어떻게 맨날 놀겠어요. 요양사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TV를 켜지 말고 엄마랑 놀고,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하죠

신체적 · 정서적 케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이 적절한 노동 환경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 여성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져 왔던 '돌봄'은 그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절하와도 이어진다. 사회는 여성화된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제도는 세금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단시간 시급제로 설계 되어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 근속이 어려운 불안정한 노동 조건 등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숙련된 돌봄 종사자가 일자리를 떠나게 하는 근본적 요인이고, 제도가 출범한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네 타임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고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요. 보통 세 타임 정도 해요. 그래야지 180만 원 정도 돼야 생활이 되는데 최저생활임금 195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한 군데에서 세 시간씩이면 아홉 시간이지만 옮겨 다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한 열두 시간 일한다고 봐야 돼요. 맨 처음에 요양보호사 월급 책정할 때 2008년도에 초등학교 선생님 수준의 그거를 한다고 얘길 했대요. 근데 10년 전인데 2018년이잖아요. 10년이 됐는데 더 열악해진 거예요. 일단은 요양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케어를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양보호사)처우가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젊은 층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질 거예요. 대상자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요양사들도 그렇고

장기근속연급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3년 이상이면 하는데 우리는 센터를 한 센터에서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을 들어가셔요. 아프다 보면 고관절에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우리한테 일자리를 주면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또 일자리 구청에다 하면 다른 센터에서 연결이 돼서 하는 거야. 그래서 장기근속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일을 계속 하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 센터에서 한 것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요구해서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10개월 정도에서 잘라요. 환자가 어쩔다고 하고 보호자가 바꿔 달겠다고 하고 그럼 일자리가 끊기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도 없어, 우리는. 편법을 써요, 퇴직금 안 주려고. 근데 민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소연도 못 하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죠. 그런데 이게 집에서 하는 일을 사회적 인식이나 집에서 하는 건 그냥 반찬거리 값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중략)생활고 때문에 많이 하고 또 몸이 아파서 많이 관둬요. 이걸 몇 년을 하다 보면 관절이 다 나가요. 환자들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경제활동 하려고 따냈는데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장기요양제도는 크게 방문요양(재가)서비스와 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주야간보호센터)요양서비스로 나뉜다. 시설 중에서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높았는데, 그 이유로, 방문요양과 비교했을 때 이용 가능 시간이 길다는 장점을 들었다. 반면 같은 시설로 분류되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용시설’ ‘깔끔한 감옥’이라는 표현이 반복될 만큼 기피하는 정서가 강력했다. 이 차이는 요양시설에 대한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돌봄을 나누고 있다는 감각이 주는 효과에서 기인한다. 데이케어는 일정시간 부모

돌봄을 전문 인력에게 맡기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있다는, 돌봄 나눔의 정서가 강한 반면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24시간 시설은 돌봄을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불편함을 수반한다. 돌봄을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돌봄은 신체적 케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돌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손은주 (53세, 기혼, 돌봄기간 3년)

(데이케어)시설을 이용하고 한 10월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한 5~6개월 재미있게 다니셨어요 유치원처럼 다니시니까 간식주고 밥주고 또 저녁까지 다 드시고 오시거든요 그니까 저는 너무 좋았죠. 제발 오늘만 같아라

박선영 (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데이케어센터 가시기 전까지는.. 그때가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엄마 혼자 막 불안해 하셨죠. “어디 가니? 몇 시에 오니?” 그때마다 누구를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셔서 불안해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참 다행이고

이선희 (50세, 기혼, 돌봄기간 4년)

수용시설 같은 느낌이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열악해요. 제가 엄마 하나를 케어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런 분들을 몇분 안 되는 분들이 계속 케어한다는 거는 와 이걸 정신적으로도 피로하고 육체적으로도 피로한 일인데, 처우같은건 사실, 단가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게 맞나?

이은영 (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중략) 요양병원을 8~9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가장 그 당시에 잘 되어있다는 경기권의 분당 쪽으로 내려가는 그 곳이 시설이 잘 돼있고 요양병원인 곳을 갔는데 월비용이 350 그 당시에. 그런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요새도 서울 성모병원 가면 호텔처럼 아주 깔끔하잖아요, 병원들이. 그런데 굉장히 깔끔한 감옥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깔끔한 굉장히 넓은 공간에 엄마의 공간은 한 평밖에 없는 거죠, 침대 안에.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강제 수용시설이죠 종합병원은. 그래서 그런 공간에 엄마 혼자 두는 것이 저는 너무 끔찍했고 내가 만약 엄마라면 24시간 중에 되게 얼마만이라도 가족과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또한 한 명의 돌봄 노동자가 장시간 많은 수의 노인을 돌보는 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노인 ‘학대’가 개인의 악행이 아닌, 가족 내에서는 독박 돌봄, 제도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인터뷰이들은 말했다.

이은영 (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가끔 뉴스에 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이 구타를 했다. 폭력을 했다. 이런 게 나오면 저는 한편으론 좀 이해가 돼요. 어떤 이해가 되냐면 유치원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일의 압박으로 그 사람들을 해놓는 순간 내가 여유로워야지, 한 시간 반 밥 주는 걸 여유롭게 떠먹일 수 있죠. 한 시간 동안 네다섯 명을 다 밥을 먹이고 치우고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빠릿빠릿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욕이 올라 올 수……. 저도 저희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엄마, 좀 해보자.’ 하면서 하는데 나도 이런데 생판 모르는 남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있어야 이 사람들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육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보인다고 할까?

장영숙 (56세, 이혼, 돌봄기간 17년)

방이 한 방에 8명에서 많은 덴 11명 이렇게 있는데 보호하시는 분들이 다 조선족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기저귀 갈고 이럴 때 그러니까 정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엄마를 모셔놓은 상태에서 정말 아닌 것 같은 거예요.(중략) 시설에서는 머릿수 당 수당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음식 형편없고 조선족 요리사는 쓰는 것 같고 한국 사람이 먹을 입맛이 아니예요. 그리고 간병인도 조선족이고 거기는. 그리고 한 방에 하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조선족 출신 간호사일 수는 있겠죠. 비용이 저렴하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없는 거고 돌보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되게 분노감 같은 거 느껴질 정도로.

이명희 (50세, 비혼, 돌봄기간 5년)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요양보호 시설에 가서 부모 잘 못 모신다고 해서 타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이게 되게 연동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24시간 제가 해봤잖아요 정신력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끝까지 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된거야 한사람한테 몰빵을 시키니까 정말 시설이 있다면 많이 돌아가면서, 휴식을 좀 취하고 온 다음에 이렇게 돌보는게 맞다. 한사람이 한사람을 전격적으로 케어하는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IV. 변화를 위한 상상

1. 돌봄에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돌봄 문제 핵심은, 돌봄 노동이 특정 성별에게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다. 돌봄의 젠더불평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돌봄의 사회화·공공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다수의 인터뷰이들이 가족 내 남성구성원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돌봄 비용만 부담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돌봄을 나눈다는 건 비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돌봄 행위에 동참하는 것, 돌봄에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정서적 힘듦을 함께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다.

진명주 (48세, 비혼, 돌봄기간 5년)

기본적으로 육아도 아빠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돌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요. 아들이 돌보는 게 맞지. 오빠한테도 그랬어요. 새언니가 돌보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엄마니까 네가 돌봐라, 했어요.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엄마 자식이 셋인데, 언니랑 저만 하고...오빠 한 명이 약간 역할 부담을 같이 해줬으면 그 만큼 덜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하질 않으니까요.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남동생이나 아빠는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 노동의 불안해지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 서만 간병을 했고, 저는 그걸 넘나들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눈치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좀 말도 듣고.

인터뷰이들이 공통적으로 덧붙인 말은 ‘한 명의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돌봄은 한 명이 아닌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다. ‘돌봄은 품앗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왔다. 대통령이 나서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공표하는 등 사회적으로 ‘돌봄’은 공공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내에서 돌봄을 ‘딸’에게 미루고, 장기요양종사자의 여성 비율이 95%에 가까운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2. 관계 중심의 일상적 돌봄

‘내가 꿈꾸는 돌봄 제도/시설/삶의 모습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은 던졌을 때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노년에도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공동체’, ‘돌봄협동조합’을 언급했다. 일반적인 시설 입소를 이야기하는 여성들 역시, 그 시설이 ‘요양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일상과 격리된 공간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처럼 삶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 했다. 이는 시장화 된 돌봄이 아닌 평등하고 관계 중심적인 돌봄 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

내가 엄마를 돌보면서 일을 그만두지 않은 건, 돌봄에 일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 물론 희생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매달려야 하나? 제 일에 대한 신념이 무엇보다 컸던 것 같고 경제적인 이유도 크고.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전업주부로 (가족에게 집중하면서) 살다가 저런 질환을 겪으면서 사회적 관계가 정말 끊어지는 걸 보고서는 아 사회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

김은숙 (51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

나는 만약에 내가 그런(거동이 힘든) 경우가 된다면 요양원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중요한건 그 시설에서 좋은 사람, 요양보호사 분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게 관건인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도 노년후기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싫던 좋던 간에 내 힘으로는 못사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박선영 (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

아쉬움이 느꼈던 게 아파트마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중략) 격리돼있는 곳이 아니라 운동장시설도 같이 이용하고 학교의 꽃밭도 같이 돌아볼 수 있고 애들이 와서 자원봉사라는 건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거짓말 자원봉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와서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 모시고 꽃밭 돌아보게 하고 저는 그런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3. 가족을 넘어, 확장되는 관계를 위한 새로운 제도

인터뷰이 중 몇몇은 ‘혈연이 아닌 가족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법¹⁰⁾과 건강가족기본법¹¹⁾에 따르면 가족은 한국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족의 구성 요건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제한되어 있다. 민우회가 제안하는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모습은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 가족을 중심으로 닫혀있지 않으며, 돌봄 공동체의 가능성 역시 결혼을 중심으로 닫혀있지 않은 사회다. 가족을 혈연이 아닌 친밀성과 관계성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변화하는 현실을 법·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김은숙 (51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

인간은 공동체적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노년이 되면서 친구가 가족보다 더 필요하고요.

장영숙 (56세, 이혼, 돌봄기간 17년) :

여자 노인들 공동체, 여성노인 공동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노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도 서로 의지가 되면 좋겠는데 정서적인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지숙희 (44세, 비혼, 돌봄기간 2년) :

결혼 안 한 미혼 친구들도 많거든요. 친한 친군데, 편의상 딸내미라고 할게요. 딸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로 마마, 딸, 저보다 11살 어리냐? 그 친군데 한 동네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처에서. 그래서 가족은 확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다른 미혼 친구들이랑도 뜻이 맞으면 같이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중략) 저는 딸내미가 아팠을 때 생각하면 둘이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프면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없다. 그게 문제인 것 같긴 하다.’ 생활동반자법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확실히.

생협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일단 건강 자체도 많이 케어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도 제 2차, 3차 진료까지 할 수 있고 그런 데서(협동조

10)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약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합) 요양병원 건립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합을 통해서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방법도 생길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요.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긴 한데. 하나의 마을에서 주치의제도 해서 그 마을의 인원들을 다 케어를 하고 그 마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생겼으면 좋겠고.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4. 돌봄과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국가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언론도 나서서 ‘10명의 노인을 1명의 청년이 부양(돌봄) 해야 한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낸다. 사회 전반의 나이듦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함께 커진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담론들은 노인을 ‘나오는 돈은 없고 들어가는 돈만 있는’ 잉여적 존재로 위치시킨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돌보고 돌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함에도 노년이 ‘(돈 없고, 아픈 상태로)오래 사는 것은 재앙’, ‘늙으면 민폐’, ‘누군가의 짐’으로 정의되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 나이듦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상상할 수 없다. 인터뷰이들은 돌봄을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돌봄과 노년에 대한 전사회적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노년학이 필수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육아만큼 노인 돌봄에 대한 정보와 일상적 교육이 필요하다’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노년에 대해서 사회가 들여다보고, 죽음, 질병에 대해 터부시하는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주영 (50세, 비혼, 돌봄기간 14년)

은퇴는 빨라지고 살 수 있는 기간은 옛날보다 늘어났잖아요. 평균수명이라는 게 늘어났잖아요. 은퇴 후의 삶은 되게 길어졌거든요. 거의 20년. 어떻게 보면 100년 시대 이려면 거의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돈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노인에 대한 일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삶에 대한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꼭 노동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지숙희 (44세, 비혼, 돌봄기간 2년)

돌봄 교육. 가족들한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한테도 느꼈고 엄마 때도 그렇겠지만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를 다루는 방법 이런 거 해가지고 홍보용 영상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과는 손을 5초 동안 잡고 눈을 5초간 맞추시고 안정을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그 상황이 됐을 때 홍보하는 영상이 있던데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한테 강의, 교육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상황이 맞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편할 테니까. 가족도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 강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심희영 (54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나도 언젠가 나이가 들 텐데 더군다나 나는 봐줄 사람도 없겠지만 노인의 상태, 심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건 힘든데 이제 부모도 나이가 들면 신체가 아이처럼 정신도 점점 아이가 되니까 거꾸로 이제 엄마한테 내가 케어가 필요하다. 프레임을 바꾸게 되더라고.

이선희 (50세, 기혼, 돌봄기간 4년)

인생 후반기에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해서 너무 준비 없이 닥치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의 태도나 자세 그리고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시도들이나 노력들이 없으면 막상 닥쳤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장영숙 (56세, 이혼, 돌봄기간 17년)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일상적으로 집안에서 장례를 치루는 문화가 왜 안 될까. 아파트 문화나 뭐 이런 게 바뀌는 거랑 맞물려갖고 그렇게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는 것. 병원이란 공간으로 이걸 완전히 외주화하면서 생기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저는 웰-다잉 운동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은영 (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저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너무 터부시하고 죽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죽는 건 정말 지리한 과정이거든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평소에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하잖아요, 분위기들이.

V. 나가며

물론 앞에서 언급된 새로운 상상들은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돌봄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돌봄연대사회’로의 변화는 요원할 것이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관점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돌봄 비용을 부담할 자녀가 없거나 가족들의 경제력 유무와 상관없이 평등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 복지로서의 돌봄 제도 구축’이다. 현재와 같은 영리형 민간기관 중심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노인 돌봄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총 2,573개소 중 개인 운영 기관이 98%으로 공공의 역할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직영 통합 재가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요양서비스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이다. 민간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종사자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원과 같은 직접 고용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 보장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및 인권,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에서 개호(돌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맨 먼저 가족 중에서 ‘누가 보살필 것인가’를 정한다. 이때 개호자로 가장 먼저 꼽힐 사람은 돌봐야 하는 다른 가족이 없는 독신이다. ‘개호 독신’이란 초고령사회라는 흐름과 만혼화, 비혼화라는 흐름이 만난 지점에서 생긴 멈출 수 없는 소용돌이이다. 그렇기에 독신자가 부모를 돌보는 것, 개호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 왔다.”

- 『나홀로 부모를 떠안다』, 야마무라 모토키 저

현재 일본 사회는 비혼화와 고령화로 인한 ‘비혼 부모 돌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즉 비혼 자녀에 의한 부모 돌봄 뿐 아니라 법적 가족이 없는 노인들의 돌봄 문제 또한 멀지 않은 현실이다.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는, 돌봄연대사회로의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토론 1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돌봄연대사회를 위한 고민

1. 들어가는 말

고령화 사회와 비혼화가 맞물리는 사회속에서 한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한 복지 제도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매우 크고 심각하다. 그러나 발제에서처럼 우리사회와 제도는 대부분 가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여성과 제도속에 있다고 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노동자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은 노인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 하였으나 제도자체의 결함과 운영문제 등이 복합되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도입초기부터 민간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공급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가족부담 해결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여 10여 년 째 문제제기 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개인이나 가구에 맡겨진 돌봄의 부담을 국가가 제도화 했다는 큰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인돌봄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겨져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만든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보다 그때그때 표면적인 문제 해결 또는 제도 초기 운운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 여성, 보건의료, 사회복지 단체들이 모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요양공대위)를 결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 공동대책위는 2012년 결성 후 곧바로 노인장기요양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고 개정취지에 대해 전국설명회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요양공대위의 문제의식은 민간중심 운영에 따른 필연적인 문제점인 요양기관 과잉공급 및 과당경쟁,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편법 운영, 서비스 질 저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초기 시행과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얘기했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점점 고착화되고 있었다. 요양공대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었다.

당시 국가인권위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여 2012년 6월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자료참조)를 할 정도였다. 요양공대위의 법개정 활동은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공대위 단체들의 연대로 2016년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직접인건비 비율 정립',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마련', '재무회계의 투명화'를 만들어냈다. 그 이후 공대위는 좀 더 강화되었고 최근에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비공단 설립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요양공대위의 이러한 활동은 요양제도가 만들어진 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와 후한 평가속에 묻혀있던 심각한 문제점을 알려내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고 그 외에도 공대위 구성원들의 연대활동으로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요양노동자들이堂堂하게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 맡겨진 요양서비스 구조는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 공단' 사업은 매우 축소되어 그 목적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 몇 가지 제언

0. 돌봄의 전면적인 사회화를 위해서는 돌봄의 전 영역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더 이상 개인에게 그 부담이나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돌봄을 상업화와 이윤화동기에서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0. 불평등한 돌봄의 쓸림을 방지하고 돌봄제공자가 건강하게 돌봄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화와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0. 함께 하는 돌봄, 함께 돌보는 돌봄연대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종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듯이 노인 한분을 잘 돌보기 위해서도 마을이 필요하다) 이럴세 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법제도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

0.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권력자원을 가진 중하층 여성과 가족 내 가장 취약한 권력자원을 가진 비혼 여성에게 돌봄노동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는 관심을 끊어 버리면 그 사람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돌봄관계에 대해서 초중고 교육에서 그 내용이 학습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0. 돌봄이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학습하고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돌봄을 전면적으로 가시적 영역으로 드러내자는 발제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새로운 차원의 정의기준 마련과 사회정의 개념의 새로운 규정제안에 찬성한다

0. '돌봄의 중요성'과 '함께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논의단위를 꾸리고 캠페인 같은 실천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양공대위에서도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토론과 실천 제안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 권고안

제 목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 1) 요양보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에 기본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실비변상, 휴게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 2) 요양보호 서비스 수가(酬價) 중 인건비율을 고시하는 등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 3) 교대, 휴가, 휴식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 가능한 수급자의 수를 반영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강구해야 한다.
- 4) 장기요양기관에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배치하여 수급자들이 적절한 응급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요양보호사가 의료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운영 등 설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경영이나, 비영리 법인에 의한 운영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인력배치 기준,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경우 수급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하고 적정한지, 요양보호사의 근로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가.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 관련 상병, 수급자 측의 폭행·폭언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행·폭언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건강호전, 부양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2012. 5. 7.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사건' 및 2010년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고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행·폭언·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제1항, 제7조 (b), (d), 제9조, 「근로기준법」제50조, 제54조, 제56조, 제58조, 「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권고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9호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저임금 및 포괄임금 남용 개선

가. 저임금 및 포괄임금 남용 실태와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보고서¹²⁾(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

12) 2011년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전국 총 2,694명의 요양보호사를 면접 조사함.

서'라 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조건과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¹³⁾(이하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라 한다.)에 의하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6,000 ~ 7,000원 선이나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되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업무상 실비,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수준이고,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가 생계형 일자리로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제2011-137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로 하여 하루에 두 군데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실비지급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관 중 42%가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제 수당, 퇴직금 없음'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거나 휴일근무, 가산임금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표상의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은 휴계시간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실제로 1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휴계(수면)시간 명목으로 4시간을 공제해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여 법정 휴계시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나. 저임금 및 포괄임금 남용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은 그에 대한 평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지표를 보면 주로 기관운영, 환경이나 안전,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 관련 사항 위주로 되어 있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항목은 직원의 후생복지 부문으로 비중이 작은 편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이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이므로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주목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실적에 따라 보험료 수가가 지불되는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기관의 운영비(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등), 요양보호사 및 실무자 임금 등이 수가에 포함되어 기관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임금의 수준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 따라서 설령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은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어려운 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전체 수가 중 인건비 비율을 설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작성도 요청된다.

13) 2011년 5월~7월 전국 25개 요양기관의 재가 요양보호사 175명, 40개 요양기관의 249명을 면접 조사

2. 장시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개선

가. 근로시간,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실태와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 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41.8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여성노동조합의 2010년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¹⁴⁾(이하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라고 한다.)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 이하라고 대답한 경우는 27.13%, 44시간 초과 56시간 이하라고 근무한 응답자는 41.7%에 이르러,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9시간이었다.

시설 요양보호사와 같이 수급자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돌봄 직무의 경우 교대근무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심야근무를 포함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조화를 잃기 쉽다는 것을 감안하고 지나친 장시간 근로와 야간 근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b), (d)항¹⁵⁾ 및 ILO 제47호 협약(불임 참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도 지양하고 있으므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기준은 '전체 입소자 : 전체 요양보호사'로 요양보호사의 교대근무, 휴일,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인이 실제로 돌봐야 하는 입소자 수는 주간에는 평균 9.7명, 야간에는 평균 16.5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시설 요양보호사가 치매, 중풍 등으로 전면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체위변경, 식사, 목욕 등을 담당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봐야 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문제일 뿐 아니라 수급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휴게와 관련하여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53.63%,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가 32.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 기준에서는 요양보호사 휴게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위에서 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휴게시설이나 요양보호사의 휴식권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없다.

-
- 14) 2010년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주관(노동부의 노동단체 지원 사업)으로 전국 노인장기요양 시설과 재가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975명(재가요양보호사 792명, 시설요양보호사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 15)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 휴일

나. 장시간 노동,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개선방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야간근무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대근무, 휴일, 휴가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현실적 근로조건과 위 인력배치기준 등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를 수차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가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를 통한 고용 안정 방안 강구

가. 재가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정 실태 및 원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시간은 30시간~40시간미만이 21.31%, 20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는 20.71%, 20시간 이하는 42.6%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항목에 '아주 그렇다'가 36.36%, '약간 그렇다'가 22.42%로 전체 응답자의 약 59%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재가 요양보호사가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2인 이상 수급자를 확보해야 하나, 수급자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으로 갑작스럽게 요양보호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1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약 19,918개소로 2008년 시행 초기에 비해 5배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요양 3등급 수급자(2010년 기준 175,272명)들이 일반적으로 재가 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재가 기관 1곳 당 평균 서비스 대상자는 8.8명으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이 한 기관 당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수요에 비해 난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고정수입을 얻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어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공급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내용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록에만 편중¹⁶⁾되어 있고 특히, 기관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는 부족하여¹⁷⁾ 요양보호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편중과 난립으로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받는 보험료 수가를 수급자의 자기부담금 대납이나 마케

16) 공공운수노동조합(2011), 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p. 34

17) 이운정(2009),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공급 형평성 시계열 변화분석', 보건복지포럼, p. 63

팅 비용으로 충당하여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요양보호 서비스 이외의 노무까지 제공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현행 법률상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평가지표를 활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와 그 평가결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인 전국 3,195개소 장기요양기관 중 83.5%가 '우수' 또는 '양호'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변별력이 없고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차등적 평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나. 재가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 방안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평가 지표를 내실화하여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기준을 엄격히 마련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경영이나 비영리 법인에 의한 운영 등 합리적 운영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요양보호 서비스 외 노무 제공 개선

가. 요양보호 서비스 외 노무 제공의 실태 및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요양보호 서비스 외의 노무 제공을 강요받거나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이를 업무상 애로사항으로 꼽은 경우가 약 44%로 조사되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재가 요양보호사 조사대상자 중 58%가 손님접대(24%), 김장(23%), 농사일(14%), 기타(14%) 등 요양보호 서비스 이외의 노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21.12%가 드레싱, 50.85%가 석션, 5.36%가 배뇨관 삽입, 56.41%가 관장에 해당하는 처치를 해보았다고 답하여 의료행위와 같은 부당 업무를 하게 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에 의하면 70.54%가 야간 근무시 간호사 없이 요양보호사만 근무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해고 또는 수급자의 기관 변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특히,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서비스 외 노무 제공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인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시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간호인력이 시설에 부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2011-137호에 따르면 '야간 배치 인력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의무적 배치를 명시하지 않아 야간에 의료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요양보호 서비스 외 노무 제공의 개선 방안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서비스 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을 지키고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려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이 요양급여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의료인력 관련 규정의 미흡,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석션, 관장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처치를 하는 것 역시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부담일 뿐 아니라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위험부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5. 산업안전 보호 조치 마련

가. 산업안전 실태 및 문제점

요양보호사는 치매 혹은 정신질환 등의 질병상태를 가진 수급자의 특성상 업무 수행 중 폭력·폭언·성희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폭행이나 폭언)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80.72%,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30.41%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에 대하여는 시설 요양보호사가 33%, 재가 요양보호사가 16%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가해자로 수급자 외에 수급자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후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49%,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25%가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설 재가 요양보호사 모두 '치매 등 질환 증상으로 여기거나'(시설 51.72%, 재가 31.25%), '이야기해봐야 안될 것 같아서'(시설 17.24%, 재가 25%)를 들고 있으나,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 자리를 잃게 될까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5%로 시설 요양보호사(1.72%)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체위변경, 이동 보조, 목욕 등의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 모두 근골격계 통증으로 지난 1년 내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45~67%였으며, 1일 이상 일을 못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도 14~23%였다.

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자가 치매, 뇌혈관질환 또한 파킨슨 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 지침 마련이나 이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56.9%였으며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44%로 절반 정도의 요양보호사는 안전보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요양보호사 산업안전 보호 방안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노인질환별 요양보호기술 등을 담고 있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를 발간하였으나 관련 교육을 기관의 자율에 맡겼고, 직무교육 교재의 내용 또한 요양보호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또는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사후 구제절차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매뉴얼 및 사후 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인 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폭행·폭언·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을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수급자 및 수급자의 보호자나 동거 가족에게도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발생 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토론 2

지은숙 (비혼돌봄연구자/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두 분의 발표문을 읽고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발표문에 담긴 성평등과 복지, 돌봄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였고 비혼여성의 부모돌봄의 현실과 경험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제시한 연구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구에 협력해 줄 면담자를 찾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다시 글로 바꾸는 작업의 고생스러움을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작업 덕분에 한국 비혼여성의 부모돌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진행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토론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두 분 발표자의 발표문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와 질의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일본의 비혼돌봄자를 연구해온 제가 두 분 발표문에서 제시된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느낀 소감에 가까운 코멘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집단을 연구해 온 토론자의 눈에 한국의 비혼돌봄여성의 사례에서 어떤 점이 부각되어 보였는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편적인 지적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분석에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석재은 선생님의 발표문부터 가겠습니다. 첫째로 분석개념의 문제부터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1, 2장의 서술내용과 4장의 연구결과 간의 분석적 연관성이 다소 느슨해 보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부분적으로는 1,2장에서 “돌봄의 제도화”와 “돌봄의 사회화”, “돌봄정의”와 “돌봄 민주주의” 등의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탓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들이 등장하는 맥락이나 지시하는 바, 개념들 간의 관계나 분석개념으로서 의의 등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는 단정적 서술과 근거자료의 문제입니다. 노인돌봄에서 비혼딸에게 돌봄부담의 “지나친 쓸림”(소제목)이 일어나고 “부정义的한 독박돌봄”(부제목)이 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기에는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돌봄이 집중되는 40대-60대의 비혼여성 인구 규모가 5%내외로 작은데 자녀세대 돌봄의 분배에서 ‘지나친 쓸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독박돌봄은 비혼딸의 부모돌봄뿐 아니라 며느리나 부인 등 여성이 주돌봄자인 경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비혼여성의 부모돌봄의 속성인 것처럼 제목에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지나친 쓸림”이나 “부정义的한 독박돌봄”은 여성돌봄자 내에서 비혼딸 돌봄자가 지닌 특수성을 수집한 자료

에 근거해 규명한 후 결론적으로 등장해야 할 서술이 제목으로 앞질러 나와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는 분석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부모돌봄의 주체가 며느리에서 친자로 이행하는 것을 가부장제의 균열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변화가 연장자중심 남성중심이라는 가부장제의 근간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부장제로 이 변화를 설명하려면 ‘전통적’ 혹은 ‘부계중심적’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는 <표 1>의 데이터와 관련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성별 연령별 혼인 상태통계를 활용해 “부모돌봄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추출해 낸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시하신 통계에서 40대-50대의 미혼율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혼아들 집단이 향후 부모돌봄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최원진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터뷰이 기본정보 제시에 관한 제언입니다. 인터뷰 자료가 가족돌봄의 분배에서 나타나는 비혼여성으로의 쏠림이나 독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인터뷰이 기본정보에서 형제관계나 형제의 결혼유무는 정보로 제시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4장을 읽으면서 해당정보가 없어서 제시한 사례의 함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둘째는 서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의미가 불명확한 진술이나 (2) 설명부족과 개념 간의 무리한 연결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내에서 돌봄을 여전히 ‘딸’에게 미루고, 장기요양중사자의 여성 비율이 90% 이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은 불가능할 것이다가 아니라 석재은 선생님이 서술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기능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는 사회화”라거나 “절반의 사회화”(5쪽 4-7행)라고 진술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 “민우회가 제안하는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모습은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 가족을 중심으로 닫혀있지 않으며, 돌봄공동체의 가능성 역시 결혼을 중심으로 닫혀있지 않은 사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성평등’과 탈가족 돌봄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전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모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최원진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성민우

회가 추진해 온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비전에 포함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돌봄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련법률제정과 관련해 민우회가 시행중이거나 구상중인 내용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발표문의 내용과 구성에 근거한 코멘트와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비혼돌봄자를 연구해온 제가 두 분 발표문에서 제시된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느낀 인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에서 노인 돌봄을 떠받치는 사회보험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개호보험제도가 각각 성립되고 시행되는 방식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에 처음 출범했는데, 이 제도의 출범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가족돌봄의 사회화', '며느리 해방'을 내건 광범위한 여성운동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만들 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며느리가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일본의 미풍양속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보수파에서, 가족돌봄자들, 며느리들에게 현금보상을 해주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며느리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 측은 어떠한 형태의 현금보상도 바라지 않으니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서비스를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현금지급 없는 현물서비스로만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단기간에 노인돌봄서비스가 증대하고 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나타난 제일 큰 변화 중 하나가 며느리자 돌봄자가 급감한 것과 그 여파로 가족돌봄자가 다양화된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가족돌봄자 중에서 며느리 돌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제도 출범 5년 후에 15%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감소된 부분을 배우자 돌봄이나 친자녀 돌봄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돌봄자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 주돌봄자 중 30% 이상이 남편이나 아들 등 남성돌봄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일본처럼 현물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이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자신의 가족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제도에서 변칙적인 현금지급이 발생했고 이것이 확대돼서 전체 장기요양보호사 중 30% 이상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화가 다소 주춤

하게 되었고, 가족돌봄자의 구성에서도 일본처럼 며느리 돌봄자가 급감하고 가족돌봄자가 극적으로 다양화되기보다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경향으로 제도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든 일본이든 노인을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의 도입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시키고 돌봄을 사회화하는데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미비나 고질적인 가족주의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고령화와 개인화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제도가 인구변동을 따라잡는데 3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때문에 제 세대에서 노인돌봄에서 가족이 지는 부담이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한일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경으로 한국의 비혼여성 돌봄자의 사례에서 어떤 점이 두드러져 보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여성이 자녀세대 돌봄분배에서 1순위인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 마찬가지인데, 자택돌봄의 경우 한국의 비혼돌봄자의 독박돌봄의 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재가서비스의 종류가 단조롭고 장기요양보호사에 집중된 결과인 거 같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는 재가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으로 방문하는 사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토론자가 만난 비혼돌봄자들 중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비록 독박돌봄이지만, 케어플랜을 짜주고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케어매니저, 의료적 처치와 조언을 해주는 방문간호사,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헬퍼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돌봄에 대한 조언과 정서적 지원까지 얻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비혼돌봄자들은 회사일 때문에 출장을 가거나 갑자기 집을 비울 때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들 서비스제공자 특히 케어매니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당사자를 위한 자조그룹(self-help group)에 나가서 기분전환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족회'라고 불리는 돌봄자의 자조그룹은 일본 전국에 3만 여개 가량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적긴 하지만 비혼돌봄자나 딸돌봄자만을 위한 모임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비혼돌봄자는 돌봄전문인력이나 당사자그룹과의 네트워크가 취약한 것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한국의 비혼돌봄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부모의 주돌봄자가 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 부모돌봄에 즈음해 헬퍼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은 부모돌봄과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차이에는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의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 세대는 고도경제성장의 혜택을 입은 세대입니다, 고령자 중 자기집을 소유한 비율이 85%를 넘고 연금도 월평균 150만원 안팎으로 자녀가 부모를 돌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부양하는 이들은 열 명에 한 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본 발표문에 제시된 사례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신체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자 세대는 연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더라도 생활가능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노인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돌봄제공자가 돌봄수혜자에 대한 신체적, 생활적 돌봄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양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가족돌봄의 분배에서 아버지와 비혼딸 간의 분배가 협의사항조차 못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다가 그 바톤을 비혼딸이 물려받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혼딸이 주돌봄자가 되는 과정에는 아버지가 주돌봄자로 어머니를 돌보다가 한계에 이르면 비혼딸이 바톤을 이어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녀세대의 돌봄분배에서 비혼딸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공통적이지만, 한국의 아버지는 일본의 아버지에 비해 비혼딸보다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돌봄책임이 더 무겁고 우선한다는 의식이 희박한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료의 대표성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제시된 사례로 판단하건대, 한국의 비혼돌봄자의 경우 일본의 비혼돌봄자에 비해 가족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에 대한 관심이나 지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비혼여성을 만나면서 공동체, 돌봄협동조합, 혈연이 아닌 가족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 등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스스로 언급한 이들은 1968년에 결성되어 2003년에 해산한 독신부인연맹의 회원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80세이상이었습니다. 60세 이하의 여성중 이러한 방향에서 자신의 노후를 탐색하고 있는 이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돌봄자들에게 시설을 포함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미분화된 상태로 끌어오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문요양사에게 돌봄수혜자에 대한, 정서적 케어, 지적 자극, 외출보조 등을 요구하고 방문요양사의 자질함양이나 재교육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돌봄서비스 미분화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설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높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재가서비스를 선택한 돌봄제공자나 돌봄수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인데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이례적일 정도로 높고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노인돌봄시설 서비스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일 : 2018년 10월 17일

발행인 : 한국여성민우회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성산동) 시민공간 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o@womenlink.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womenlink1987

트위터 @womenlink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2018 변화의 시나리오'로 지원됩니다.